

韓國의 開國과 國際政治*

董 德 模(董天)**

<차례>

第一章 序 論	第四章 韓國의 開國과 國際關係
第二章 征韓論	第五章 結 論
第三章 韓國의 開國	

I. 序 論

西洋國家와 東洋國家間의 公式的이고 現代의인 國際關係는 英國의 阿片戰爭을 통하여 中國과 南京條約을 締結함으로써 始作되었다. 그 後 日本이 1854년에 美國에 開國되었고 “隱盾의 나라”로 불리웠던 韓國은 1882년에 와서 美國에 門戶를 開放했다. 東洋諸國, 즉, 中, 韓, 日 등이 19世紀 中葉(中國과 日本)과 末葉(韓國)까지 西洋諸國에 對하여 鎖國政策을 써온 데는 그럴만한 理由가 있었던 것이다.⁽¹⁾ 이들 東洋諸國은 西洋諸國의 國力, 科學과 技術의 優位에 對하여 잘 알지 못했으며, 中國을 中心으로 한 儒敎的 國際秩序와 島嶼 日本의 特殊性 等은 政治的으로 歐美諸國의 接觸을 그들의 既存秩序와 安保에 대한 危險으로 看做하였다. 經濟的 利害를 主目的으로 한 歐美와 農業經濟國인 이들 東洋國家의 政府들은 通商할 意思나 必要를 갖고 있지 않았다. 宗教的으로 그리고 社會的으로 儒敎와 家族制度에 깊이 뿌리박힌 이들 東洋諸國들은 歐美의 基督教과 個人主義에 一種의 嫌惡感을 가졌던 것이다. 더욱이 歐美諸國은 科學과 技術이란 物質文明에 뒤떨어진 東洋諸國을 無視하는 傾向이 있었던 反面에 東洋諸國들은 歐美人들을 “洋夷”로서 野蠻人視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西洋의 文藝復興, 宗教改革, 産業革命, 大洋航海 등은 東西洋의 船舶往來를 점점 빈번하게 하였으며 이로 因하여 海難者의 保護, 淡水와 燃料의 供給問題등이 惹起된 것이

* 1977年度 2學期에 交換敎授로 勤務한 研究報告書이다. 韓國의 開國과 國際政治를 주로 江華修好條約과 國際關係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外交學科 敎授

(1) F. Nelson, *Korea and Old Orders in Eastern Asia*,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46; P.S. Treat,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Japan*, Gloucester, Mass. Peter Smith, 1963. 3 Vols.; H.B. Mors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hinese Empire*, London, 1918, Vol. I.; P.C. Kuo, *A Critical Study of the First Anglo-Japanese War (With Documents)*, Shanghai, 1935; H.F. MacNair and D.F. Lach, *Modern Far Ea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1955, Chapters 1-2; Paul H. Clyde, *The Far East*, New York, 1952, Chapters 6-7.

다. 또한 産業發展은 그에 必要한 製造된 商品의 市場을 必要로 하였고, 市場과 資源의 獲得競爭은 利益範圍와 勢力範圍를 圍繞한 競爭으로 化하여 他國의 領土侵犯을 監視牽制하거나 他國의 進出과 獨占을 防止하려 했다. 이러한 結果로서 中國, 日本, 韓國의 順으로 西洋諸國은 交涉, 強請, 脅迫 또는 武力의 示威 또는 使用으로 門戶를 開放시켜 平等權利承認, 關稅率決定權, 治外法權 및 最惠國待遇등의 共通된 條款들을 各其의 條約에 規定하여 東洋諸國과 對等한 地位를 確認받고, 關稅의 自主權을 制限·束縛하여 經濟的으로 侵透하여 東洋諸國의 産業保護를 不可能하게 만들고, 主權을 制限하고, 東洋에 있어서의 西洋諸國間의 協調와 特典과 利益을 均霑케 하였다. 條約에 依하여 名目上의 對等한 權利를 얻고 所謂 歐洲國際社會의 一員이 된 이들 東洋國家들은 不平等하고 偏頗의인 條約을 締結함으로써 政治的·經濟的 主權을 犧牲當하였을 뿐만 아니라, 條約上의 權利·義務 遂行에 있어서, 밖으로는 西洋의 國際外交社會制度和 世界事情에 對한 知識과 理解의 不足으로 많은 困難을 當했으며, 안으로는 保守와 進歩, 守舊와 改革이라는 文化的·政治的 二大勢力의 葛藤과 衝突과 鬭爭으로 많은 소용돌이를 겪어야만 했다.⁽²⁾

極東에서 最後로 西洋에 門戶를 開放한 韓國의 鎖國은 여러가지 理由에서 說明될 수 있다.⁽³⁾ 韓半島는 地理的으로 當時의 西洋諸國의 極東海路략에 있었다. 政治的으로 韓國은 中國과의 事大宗屬關係를 맺고 있어서 中國以外的 어떤 國家와도 中國과 同等하게 對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大院君 執政下에서 外交政策은 徹底한 鎖國政策이었다. 佛·美 兩國의 遠征이나 露國來韓과, 「오케르트」의 掘塚事件, 그리고 天主教神父와 信者들의 活動은 鎖國政策을 強化시켰다. 經濟的으로 韓國은 西洋諸國의 資源이나 市場으로서의 價値가 그리 크지 못했으며 西洋諸國은 韓國에 대해 별로 알지도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1850~60年代의 西洋諸國들은 其他地域에서의 活動(英, 佛, 露), 統一戰爭(獨, 伊), 內亂(美國의 南北戰爭)등으로 韓國에 關心을 돌리기에는 다른 國內外的 問題들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地理的,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宗教的, 그리고 國際的 理由로서 韓國의 鎖國은 可能하였으며, 韓國은 계속 門戶開放을 拒絶하고 天主教를 탄압하였으며 「제너랄·셔만」號를 불태워버렸고 佛·美 兩國의 再侵에 對抗하고 戰勝·斥和의 碑石을 여러 곳에 建立하고 “隱盾의 나라”의 명칭을 얻게 된 것이다.⁽⁴⁾

그러나 이러한 鎖國도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다. 1870年代에 들어오면서 獨·伊 兩國은 統一되어 海外進出에 關心을 돌렸으며 英, 佛, 露 등 諸國은 亞細亞에서 더 많은 經濟的 利益과 政治的 勢力, 그리고 領土的 獲得에 努力했으며 南北戰爭後의 美國은 1867년에 Alaska

(2) 開國後의 中·韓·日의 國內情勢 參照. 中國에서의 太平亂과 革命, 韓國에서의 壬午軍亂, 甲申政變, 東學革命, 日本에서의 德川幕府의 崩壞와 明治維新 等.

(3) 董德模(董天), 韓國의 開國과 그 影響—韓·美條約을 中心으로, 서울法大, 1972, 第一章 參照.

(4) Jae-sun Chung (Compiler and Editor), —Catholic Korea —Yesterday and Today, Seoul, Catholic Korea Publishing Co., 1964, Book One and Two, 18-296;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 서울新韓書林, 1968 參照.

를 구입한 후, 1871년에는 韓國에 遠征까지 보냈다.⁽⁵⁾ 即 1870年代에 들어서면서 國際情勢는 韓半島를 계속 孤立된 “隱盾의 나라”로 남겨두지 않을 것 같았다. 韓國內에서도 큰 變化가 생겼다. 鎖國政策의 象徵이었던 大院君이 權座에서 물러나고, 閔妃派의 得勢로 大院君의 政策이 拒否當하게 되어 鎖國은 開國으로 바뀌게 되었다. 日本은 開國後 明治維新을 계기로 近代化를 더욱 推進하여 國力(富國強兵)增大와 더불어 海外膨脹의 政策을 썼다. 日本은 짧은 時間에 西洋의 制度를 模倣하여 軍事力의 增大를 包含한 近代化에 成功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⁶⁾ 新日本帝國은 이제 西洋의 帝國主義도 模倣하여 海外膨脹主義를 爲해 韓國의 開國을 推進하였다. 그리하여 日本에는 征韓論이 擡頭되었으며 政府는 征韓의 時期와 方法을 둘러싸고 分裂되었다. 政府內의 勢力鬭爭에서 결국 強硬武士派는 敗北하고 穩健文治派가 得勢했다. 그러나 明治政府의 새로운 實權派가 된 穩健派도 2年內에 雲揚艦事件을 유발시켜 強壓의으로 1876년에 西洋의 方法과 手段, 그리고 西洋國家들이 中, 日兩國과 締結한 內容과 같은 不平等條約을 韓國과 締結하는 데 成功했다. 이렇게 하여 韓國은 中·日兩國과는 달리 같은 東洋國인 日本에 依해 처음 開國되었으나 그 方法과 內容은 西洋을 模倣한 不平等하고 侵略的인 것이었다. 6年 後에 韓國은 西洋國인 美國에도 결국 開國하게 된 것이다.

II. 征 韓 論

1854년에 最初로 開國⁽¹⁾한 日本은 近代化와 産業化의 過程과 結果로서 市場과 資源을 追求하면서 所謂 “富國強兵策”을 推進했다. 이러한 政策은 日本의 軍國主義와 膨脹主張을 가져왔으며 膨脹主義者이며 伊藤博文의 스승이었던 吉田松陰은 이미 日本이 北으로는 韓國, 滿洲, 南으로는 琉球, 臺灣, 比律賓, 그리고 印度까지 進出할 것을 主張한 바 있다.⁽²⁾ 이러한, 近代化는 明治維新을 계기로 日本의 帝國主義를 가져왔다. 天皇의 尊敬이 崇拜로 變化되어 갔으며, 開國, 近代化, 明治維新은 政府主導下의 産業과 交易의 발달을 가져왔다.⁽³⁾

(5) P.T. Moon, *Imperialism and World Politics*, New York, MacMillan Co., 1926, Chapters XIII-XIV, E.M. 슈코프(日譯), 極東國際政治史, 1840~1949, 上卷, 第 1-2章: Clyde, *The Far East*, Chapters 8-13 參照.

(6) Hugh Borton, *Japan's Modern Century*, New York, 1955, Part 1-11; 大隅重信撰, 開國五十年史(上·下), 東京, 秀英舍, 明治 41年 參照.

(1) 이 開國條約은 Perry 條約 또는 神奈川條約이라고 불리우며, 二個의 港口開放, 遭難船員의 救助 및 送還, 領事館設置, 必須品의 供給 및 最惠國待遇等の 條項을 內包하고 있다. 條約交渉과 開國은 Treat, *Diplomatic Relations...*, Vol.I, pp.1-25; T. Dennett, *Americans in Eastern Asia*, New York, Barnes and Noble, Mc., 1922, Chapters VIII-IX; 朝日新聞社編, 明治大正史 2 外交篇, 東京, 昭和 5年, pp.19-49 參照.

(2) 吉田松陰의 1855年 8月 1日의 便紙, 吉田松陰 全集 II, p.284. David Earl, *Emperor and Nation in Japan*, Seattle, U. of Washington Press, 1964, p.174; Y.S. Kuno, *Japanese Expansion on the Asiatic Continent*, Berkeley, U. of California Press, 1937~1940, Vol.II. Documents: Appendix II, p.355. 日本의 世界統一 秘密案(사도·노부시로案)은 W.F. De Bary, *Sources of Japanese Tra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Vol.II, pp.70-73 參照.

日本이 韓國의 開國을 바라고 要求했던 이때에 中國은 이미 開國되고 계속 西洋諸國의 侵略을 받고있는 地位에서 韓國의 開國을 反對할 立場이 못되었다. 그리고 韓國은 國內적으로 大院君과 閔妃派의 勢力鬭爭으로 日本의 進出을 위해서는 有利한 狀況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韓, 中, 日의 國內狀況에서 日本은 明治維新을 계기로 積極的인 外交政策을 決定하고 過去와는 다른 새로운 制度와 樣式으로 韓國進出政策을 敢行했다. 日本의 教授 旗田의 말과 같이 “日本은 韓國에서 明治維新후 侵略의이고 軍事的인 計劃을 採擇하였다.”⁽⁴⁾ 즉 日本은 封建制度가 폐지되고 德川幕府가 끝나고 天皇의 權力이 回復되고 首都를 京都에서 東京으로 옮기고, 外務省이 設置되고 새로운 帝國政府가 樹立된 새로운 日本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新日本의 新對韓政策에 韓國側이 不應하자 日本에는 所謂 征韓論이 擡頭했다. 1868年 및 1869年에 明治維新의 한 指導者였던 木戶孝允은 速히 使臣을 朝鮮에 派하여 韓國側의 “無禮”를 묻고 不服하면 韓國을 攻擊할 것을 주장했다.⁽⁵⁾ 여기서 말하는 韓國側의 “無禮”란 大院君의 斥倭政策을 말하는 것이며, 大院君은 中國과는 事大專屬關係를 維持하면서 西歐國家를 模倣한 明治維新후의 日本에 대해서는 警戒을 하고 日本의 一方的인 對韓外交形式, 圖畫, 文句, 制度와 交涉을 拒否했다.⁽⁶⁾ 韓國側은 日本의 新政府가 一方的으로 數百年間 兩國間에 使用해오던 外交文書의 形式이나 其他 制度를 一方的으로 變更하고 韓國側에 그러한 外交方式과 制度로서 交涉을 要求하는 것을 不快하게 생각하고 拒絶했다. 大院君은 特히 日本이 西洋을 模倣하여 韓國을 對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⁷⁾ 이러한 韓國側의 態度에 日本은 점점 征韓論으로 기울어 1869年 日本外相은 對韓交涉을 過去와 같이 對馬島의 宗氏에 委任할 것이 아니라 新政府(東京의 中央政府)가 軍艦과 함께 使節을 派韓하고 對馬島에는 官吏를 派遣하여 過去의 韓國과 對馬島關係를 調査케 하라고 提議했다.⁽⁸⁾ 그리하여 日本은 對馬島 宗氏의 職位를 回收하고 明治新政府(東京)가 直接 韓國과 交涉하기로 決定하여 佐田素一郎과 森山茂를 新政府의 代表로 釜山에 派遣했으나(1870年) 交涉에 失敗했다.⁽⁹⁾ 日本은 駐日獨逸公使 Max A.S. von Brandt의 訪韓(釜山) 交涉에 日本人數名을 同行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韓國側은 “洋船來泊時에 倭人이 同騎한 것은

(3) Takahashi Hatada, *A History of Korea*, Santa Barbara, Calif., A.B.C.-CLIO, Inc., 1969, p. 92. See Earl, *Emperor and Nation in Japan*, pp. 92, 181-186, 192.

(4) 旗田, “明治期の 日本と 朝鮮,” 國際政治, 1962, No.2, English Section, p. 3.

(5) 日本外交文書, 第2卷, 第1冊, pp. 205-208. Sec. 同書 第2冊, pp. 217-274; 葛久能久, 東亞先覺志士記傳, 東京, 黑龍會出版社, 昭和9年, 上卷, pp. 25-30. 征韓黨의 組織은 p. 29 參照.

(6) 李瑄根, 韓國史最近世篇, 서울, 乙酉文文化社, 禮記 4294, pp. 310-315.

(7) Dennett, *Americans in Eastern Asia*, p. 435; Longford, *The Story of Korea*, pp. 297-298; 李瑄根, 前掲書, pp. 310-340.

(8) 日本外交文書, 第2卷, 第2冊, pp. 854-858; 第3冊 pp. 59-60, 95-96, 145-159, 265-269, 315-316, 356-361, 369-371, 410-418, 457-458, 471-474. 宮本小一郎(外務省少丞)의 “朝鮮論”은 第2卷, 第2冊 pp. 2, 855-865.

(9) 日本 外交年表並主要文書, p. 1111; 李瑄根, 前掲書, p. 325.

館倭가 和應洋醜한 때문이다.”⁽¹⁰⁾라고 激憤하여 “倭洋이 同類”라고 看做했다. 對韓交涉에 失敗한 佐田는 歸國하여 征韓論建白書를 日本政府에 1871년에 提出하였다. 즉 日本은 朝鮮을 實力으로 問罪하고 大兵力(30個 大隊)으로 朝鮮을 征服할 것이며 淸國이 干涉하면 淸國大陸까지 進擊할 것이고 國際적으로는 朝鮮을 征服할 좋은 機會이며 財政面에서 朝鮮征服은 “有利無損”하니 “富國強兵策”이 된다고 主張했다.⁽¹¹⁾ 결국 日本政府는 西鄉隆盛派의 征韓論의 主張에 따라 外務大臣 花房義質이 軍艦二隻을 거느리고 釜山에 가서 對韓交涉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朝鮮側의 冷待와 反對로 失敗하고 歸國했다.⁽¹²⁾ 花房의 交涉失敗에 더욱 激憤한 西鄉隆盛, 三條實美, 板垣退助, 後藤象二郎, 江藤新平, 副島種臣 諸參議들은 征韓論을 더욱 強하게 主張하였다. 그러나 駐日美國公使 Charles E. De Long의 報告(1872年 11月 21日 및 22日字)에 依하면 花房은 韓國에서 鄭重한 待遇를 받았으며 韓·日兩國內에는 아무 問題가 없었는데도 日本은 韓國을 罰하러 決定하였으며, 花房의 使命은 韓·日兩國間에 滿足스러운 解決이 이루어졌다는 그릇된 생각을 韓國側에 주기 爲하여 計劃되고 遂行되었다고 했다.⁽¹³⁾ 이 De Long公使의 報告中 日本國內의 主戰派와 政府가 海外의 排出口로서의 戰爭을 願한다는 報告는 事實과 그리 멀지 않다.⁽¹⁴⁾ 日本의 征韓論은 根本적으로 日本의 膨脹主義이며, “明治新政府는 그의 明白한 第一段階를 膨脹에 두었”으며 日本은 “韓國에 侵略者의 役割을 하였다.”⁽¹⁵⁾ 이러한 日本의 膨脹主義는 佛蘭西人으로 美國에 歸化하여 日本 外務省의 顧問이 되었던 Charles Le Gendre에 依해서도 刺戟받았으며⁽¹⁶⁾ Le Gendre의 構想을, 大隅에 依하면, 日本이 韓國, 臺灣 및 滿洲를 併合하여 中國을 包圍하고, 露國을 Siberia에서 威脅주고 亞細亞에서 指導者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생각은 征韓論의 指導者였던 西鄉과 그를 따르는 不平을 가진 武士들을 刺戟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影響을 주었다.⁽¹⁷⁾ 즉 征韓論은 日本의 對韓交涉의 失敗, 膨脹主義, 不平을 가진 武士들의 排出口로서, 西鄉의 그릇된 愛國心 및 個人的 野心, 그리고 日本國內에 있어서의 反西洋 感情을 다른 데로 돌리기 爲한 여러가지 理由에서 推進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新政府, 즉, 明治帝國政府의 膨脹主義, 侵略主義, 帝國主義가 그 根本理由였던 것이다.⁽¹⁸⁾ 韓日兩國間에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平和스러운 國交가 日本學者的 說明에 依하면 “明

(10) 大日本外交文書, 第3卷, pp. 95-100; 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商熙九年壬申六月記事: U.S. *Foreign Relations*, 1971, pp. 74-75; 李瑄根, 前揭書, p. 329.

(11) 日本外交文書, 第3卷, pp. 138-140; 國譯要約, 李瑄根, 前揭書, pp. 326-328.

(12) 日本外交文書, 第5卷, pp. 304-361; 355-357; Dennett, *Americans in Eastern Asia*, pp. 436-437.

(13) De Long's report, Nov. 21 and 22, 1872를 Treat 교수가 引用 解釋, *Treat, Diplomatic Rel...*, Vol. I, pp. 472-473.

(14) *Ibid.*, p. 475.

(15) Hilory Conroy, *Japanese Seizure of Korea, 1868~1910*,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ress, 1960, pp. 7 and 41.

(16) *Ibid.*, p. 40. See pp. 37-41.

(17) 時事新報, 1910年 8月 27日, Conroy, *op. cit.*, p. 390에 引用

(18) Kuno, *Japanese Expansion...* 參照.

治維新후에 이르러 情勢가 一變하였다. 富國強兵을 目的으로 한 新興日本은 西洋文明을 받아들여서 列強의 仲間に 끼우기 爲해 懸命의 努力을 하는 同時에 亞細亞의 後進諸國에 對해서 侵略政策을 썼다. 그 第一의 目標이 된 것이 朝鮮이다.⁽¹⁹⁾ 그리고 그는 明治政府의 外交政策中에는 “開化主義,” “남은 攘夷主義,” “弱國에 對한 侵略主義”가 포함되어 있으며 日本의 “富國強兵과 侵略主義는 明治政府의 一貫된 政策”이었으며, 그 侵略의 對象은 “歐洲國의 侵略에 依해 弱體가 暴露된 亞細亞諸國이었으나 그 第一步는 朝鮮으로 向했다”라고 했다.⁽²⁰⁾ 이러한 日本의 膨脹主義는, Reischauer 教授에 依하면, 明治指導者들의 支持를 받았으며, 그들은 歐洲帝國主義를 熱狂적으로 받아들여 植民地와 資源을 얻어 一等國家가 되어 日本의 防禦를 強化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²¹⁾ 日本의 膨脹主義는 明治天皇의 書翰과 岩倉의 構想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日本이 世界帝國이 되기를 꿈꾸고 있었다.⁽²²⁾ 征韓論에는 傳統的인 武士階級이 支配한 日本의 軍國主義와,⁽²³⁾ 天皇을 神格化한 日本民族의 優秀性을 強調하는 宗教的, 民族主義的 要素도 包含되어 있다.⁽²⁴⁾ 그리고 當時의 日本 國內情勢는 團結과 資源의 獲得을 爲해 海外進出을 마라고 있을 때였다.⁽²⁵⁾ 이러한 內容의 征韓論을 當時 外相이었던 副島는 “萬一 우리가 日本의 獨立을 保存하려면 우리는 大陸에 領土를 保有해야 한다. 日本이 빼앗을 나라는 大陸에서는 오로지 中國과 朝鮮 두나라 뿐이다. ……戰爭으로 日本을 強化시키는 것은 國家와 天皇에게 忠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指導原則이 되어야 한다.”⁽²⁶⁾라고 했다. 그리고 韓國과 戰爭을 하기 爲해서 西郷은 自身이 韓國에 派遣되어 殺害되면 開戰의 口實이 된다고 하면서 可能한 限, 速히 開戰을 決定할 것을 請했다.⁽²⁷⁾ 1873年 7月 29日 西郷은 板垣에게 아래와 같은 便紙를 보냈다.

“……萬一〔征韓〕決定이 내려지면 우리는 먼저 兵隊를 보낼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韓國人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撤收를 要求할 것이고, 우리側의〔撤收〕拒否는 戰爭을 惹起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當身이 本來 生覺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式의 戰爭을 挑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使節을 먼저 보내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오? 萬一 우리가 그렇게하면 韓國人들은 確實히 暴力을 쓰게 되고 우리에게 確實히 彼들을 攻擊할 口實을 마련해 줄 것이다……萬一 使節을 公式적으로 派遣하게 決定

(19) 旗田, “明治維新の日本と朝鮮,” 世界 Non-Fiction全集, 37卷 附錄 p. 1.

(20) 旗田, 朝鮮史, 東京 1952, pp. 165-166(日語版).

(21) E.O. Reischauer, *Japan Past and Present*, pp. 134-5.

(22) M. Mays (ed.), *The Emergence of Imperial Japan*, Lexington, Mass., D.C. Heath and Co., 1970, pp. 2, 3, 90.

(23) John M. Maki, *Japanese Militarism, Its Cause and Cure*, New York, Alfred Knopf, 1945, pp. 55-156.

(24) Robert T. Pollard, “Dynamics of Japanese Imperialism”, *Pacific Historical Review*, VIII (March, 1939), pp. 16-29.

(25) See, W.G. Beasley, *The Basis of Japanese Foreign Policy in the 19th Century*, University of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955, pp. 14-22.

(26) 近代日本の政治指導, 東京, 1965, pp. 256-257, Mays, *The Emergence of Imperial Japan*. p. ix.

(27) 大西郷全集, 東京, 大西郷全集刊行會, 昭和 2年, 第 2卷, pp. 736-738; Dennett, *op. cit.*, p. 442.

된다면 나는 그가 被殺될것으로 確信한다. 그러므로 나는 當身에게 本人을 보낼것을 懇請한다. 나는 副島와 같이 훌륭한 使節은 될 수 있다고 主張할 수는 없다. 그러나 萬一 그것이 죽는 問題라면 나는 죽을 準備가 되어 있음을 當身에게 保障한다.”⁽²⁸⁾

이때 朝鮮에서 勤務하던 廣津弘信은 花房外務大丞에게(1875年 5月과 8月) 朝鮮에는 “亡國의 兆가 보인다”라고 報告했으며⁽²⁹⁾ 日本政府는 征韓論을 둘러싼 論爭으로 緊張되고 있었으며, 韓國, 樺太 및 臺灣 中 어느 問題를 먼저 處理 하느냐가 問題되었다.⁽³⁰⁾ 征韓論 論爭은 同年 10月 24日 西洋諸國의 視察을 마치고 歸國한 閣議에서 岩倉具視와 大乃保利通, 木戶孝允, 伊藤博文, 大隈重信參議등의 反對로 西郷派의 敗北로 끝났다. 그러나 日本政府가 征韓自體나 大陸進出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즉 “征韓의 時期와 主導權의 문제로 政府의 意見이 分裂된 것이었으며 “西郷一派를 抑制한 明治政府는 곧 自身の 힘으로 征韓을 實行했다.”⁽³¹⁾ 征韓論의 反對理由로서 大久保는 日本의 國內의 發展, 國際의 情勢 및 財政的 弱點을 들었으며⁽³²⁾ 岩倉은 天皇에게 먼저 內政을 바로 잡아 永久的인 基礎위에 成功을 試圖할 것을 上奏했다.⁽³³⁾ 이 征韓論 論爭에서 明治天皇은 穩健派이며 內治派인 岩倉派를 支持하여 西郷의 下野를 가져왔다. 그러나 後年에 明治天皇은 “一旦 西郷에 遣韓大使로 가는 것을 許하면서, 途中 그것을 取消시킨 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말했다⁽³⁴⁾ 하는데, 萬一 이것이 事實이라면 明治天皇도 岩倉一行이 海外視察에서 歸國하기 前에는 征韓論을 支持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征韓論이 政府를 分裂시키고 결국 強硬大陸派였던 西郷의 沒落을 가져온 同年 가을에 韓國에서도 閔妃派의 得勢로 결국 強硬鎖國派였던 大院君이 權座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日本政府는 征韓 대신에, 다음해 1874년에 琉球船員의 臺灣에서의 被殺事件을 계기로 臺灣에 遠征을 보내 日本은 이 被殺事件과 관련하여 中國의 責任을 물었다. 日本은 이 臺灣遠征을 國內의 不平 많은 武士들을 滿足시키고, 征韓과 같은 危險이나 財政負擔 없이 遂行하여 國際적으로 西洋式 正當性을 主張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³⁵⁾ 日本은 이 遠征에서 國內적으로 勢力을 增進시켜 對外的으로 武威를 宇內에 빛내기 위해 특히 中國의 臺灣과 福州의 侵略을 노리고 있었던 지도 모른다. 日本諸侯였던 島津齊彬은 “現下의 形勢를 論하자면 우선 兵을 보내 淸國의 一省을 얻어서 東西大陸上에 根據를 놓아 內

(28) 大西郷全集, 第2卷, pp. 736-738; 英文은 De Bary, *Sources of Japanese Tradition*, II, pp. 148-149.

(29) 日本外交文書, 第6卷, p. 270, 299.

(30) 小松祿, 伊藤博文傳, 上, pp. 729-794.

(31) 旗田, “明治期 日本ト朝鮮,” 世界 Non-Fiction 全集, 第37卷 附錄, p. 1.

(32) 大久保利謙, 大久保利通文書, 第5卷, pp. 53-63; Conroy, *Japanese Seizure...*, pp. 47-49; De Bary, *Sources of Japanese Tradition*, II, pp. 151-155; R.H. Akagi, *Japan's Foreign Policy*, Tokyo, 1936, p. 116.

(33) 日本外交文書, 第6卷, pp. 317-318. See pp. 316-319.

(34) 海音寺潮五郎, “ナツカシキ大人物西郷隆盛,” 文藝春秋, 1965年 1月 p. 102, 106.

(35) 日本外交文書, 第7卷, pp. 1-2:38-40; See 王藝生, 日支外交六十年史(日譯), 東京, 建設社, 昭和 8年, 第2卷, pp. 82-122; Conroy, *op. cit.*, pp. 51-59.

的으로 日本의 勢力을 增進하고 外的으로 武威를 宇內에 빛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³⁶⁾ 이 臺灣遠征은 同年(1874) 4월에 組織 되었으며, 美國市民 Le Gendre와 美國船舶도 관련 되었다. 美國은 이 事實을 알고 곧 Le Gendre를 逮捕하였다.⁽³⁷⁾ 이 臺灣遠征은 中·日戰爭의 危險을 가져왔으나 英國의 仲裁로(1874年 10月 31日) 條約을 締結했다. 그러나 中國과 琉球王은 過去의 宗主關係의 回復을 원했으나, 日本은 琉球人의 保護權을 主張하여 中國과 紛爭을 계속해 오다가 1879년에 一方的으로 琉球를 縣으로 만들어 버렸다.⁽³⁸⁾ 佛蘭西의 印度支那 進出, 露西亞의 西支那(利犁)進出, 그리고 日本의 韓國 및 琉球進出들은 中國의 國際의 地位를 더욱 弱화시켰으며, 朝鮮國王 高宗은 이러한 中國의 立場은 中國의 對韓支援에 影響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高宗과 그의 顧問들은 中國으로부터 臺灣遠征後 日本이 朝鮮을 侵略할지 모른다는 警告를 받고, 中國이 宗主國으로서의 役割을 다할 수 있을런지 의심하기 始作했다.⁽³⁹⁾ 한편 大院君이 下野한 韓國에 대해 日本政府의 三條實美 太政大臣은 外務省의 森山茂에게 아래와 같은 指示를 하였다. 즉, 森山은 먼저 長崎에 가서 그곳에서 船舶을 가지고 對馬島에 가서 3隻의 小船을 朝鮮에 보내 1隻은 草梁館에 보내서 狀況을 調査하게 하고, 나머지 2隻은 巨濟, 蔚山의 沿岸부근에 碇泊시켜 朝鮮側의 反應을 살펴보기로 한다. 만일 이들 船舶이 돌아오지 않으면 또 다른 2隻의 船舶을 보내되, 萬一 이들도 돌아오지 않으면 報告한다. 萬一 우리의 船舶이 釜山 近處에서 被擊되면 對馬島로 撤收하고 狀況을 살펴보되 不可能하면 報告한다. 韓國側의 疑心을 사지 않게 操心할 것이라고 했다.⁽⁴⁰⁾ 이러한 訓令을 받고 朝鮮에 온 森山은 情報를 蒐集하여 本國政府에 報告(6月 21日)하기를 朝鮮內의 事態가 日本側에 利하며 宮闕에는 火災가 發生하고 여러 現地外交官이 失脚當하여 內紛의 徵兆가 있으며, 中國은 朝鮮에게 日本과 不和하지 말라는 注意까지 하였다고 했다.⁽⁴¹⁾ 이 報告는 朝鮮의 實情을 大體로 정확하게 報告한 것이며, 國王 高宗은 森山에게 密書를 보낼 정도로 朝鮮의 政治的 雰圍氣가 變化되었으며,⁽⁴²⁾ 國王과 戚臣들은 日本과의 正面衝突을 회피하려 했다.⁽⁴³⁾ 이때의 森山에게 주어진 任務는 “朝鮮의 政情視察에 있었지, 交涉再開는 아니

(36) 王, 日支外交六十年史, 第1卷, pp. 33-84.

(37) Dennett, *Americans in Eastern Asia*, pp. 442-443; 中·日外交交渉(李鴻章 柳原前光會談)은 王, 日支外交六十年史, 第1卷, pp. 96-105.

(38) Dennett, *op. cit.*, pp. 442-446; Clyde, *The Far East* p. 242; Borton, *Japan's Modern Century*, pp. 97, pp. 159-161.

(39) 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pp. 333-334; M. Deuchler, *Confucian Gentlemen and Barbarian Envoys*, Seattle U. of Washington Press, 1977, p. 15; 李瑄根, 前掲書, pp. 269-370.

(40) 三條의 森山에 보낸 訓令內容은 日本外交文書, 第七卷, pp. 360-361. See 田保橋,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 pp. 338-340.

(41) 日本外交文書, 第七卷, pp. 362-365; 森山の 交渉은 pp. 339-417 參照; 田保橋, 前掲書, 上, 第7章; 李瑄根, 前掲書, pp. 368-371.

(42) 田省錄記錄, 朝鮮史, 第6編, 第4卷, p. 341; 日本外交文書, 第七卷, pp. 404-414.

(43) 田保橋, 前掲書, 上, p. 384; 日本外交文書, 第七卷, pp. 404-414; Deuchler, *Confucian Gentlemen and Barbayan Envoys*, p. 18.; 朝鮮史 第六編 四卷, p. 341.

었다.”⁽⁴⁴⁾ 그러나 그의 朝鮮側과의 交渉이 停頓되자, 그는 “朝鮮國內의 政情不安에 乘하여 軍艦을 朝鮮近海에 派遣하여 그를 威嚇”하는 것이 第一 效果的인 手段이라고 생각하고⁽⁴⁵⁾ 同年(1875年) 4月 15日 副官 廣津을 東京에 보내 外務大臣에게 軍隊派遣要請의 建白書를 上申했다.⁽⁴⁶⁾ 이 廣津建議書에는 “朝鮮國 內訌에 際하여 交渉促進을 爲해” 1~2隻의 軍艦을 發遣하여 對州 近海를 測量하게 하여 朝鮮國 內訌에 乘하여 日本의 “應接의 聲援”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⁴⁷⁾ 이 森山과 廣津의 主張은 “變形的 征韓論”으로 볼 수 있으며 4個月후에 있는 雲揚艦事件의 發生을 示唆하는 것이라 하겠다.⁽⁴⁸⁾ 二週日後 日本 外務大臣 寺島宗則은 森山에게 追加 訓令을 보내면서 “外交手段에 依해 當初의 目的을 達成하라”고 했다.⁽⁴⁹⁾ 이 때 日本外相 寺島는 森山, 廣津등의 “變形的 征韓論” 主張에 同意하면서도, 2年前의 西郷派의 征韓論을 反對한 政府로서 慎重을 기할 必要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寺島 外相은 三條 大政大臣과 岩倉大臣의 承認을 얻어 海軍부와 協議하여 軍艦 春日, 雲揚, 第二 丁卯 三隻을 朝鮮近海에 派遣키로 決定했다.⁽⁵⁰⁾ 이 軍事行動은 征韓論者들의 反撥을 두려워 하여 “極秘裡”에 이루어졌으며, 閣僚中에서도 이 事實을 아는 사람이 아주 적었다.⁽⁵¹⁾ 軍艦出現後 이 사실을 알게 된 征韓論者 板垣退助는 三條와 岩倉 兩大臣에게 政府의 行動에 矛盾이 있음을 詰責하고 日本軍艦이 韓國에 派遣되어 練習을 하게 되면 江華灣에 闖入하여 결국 戰爭을 하게 된다는 것은 明若觀火하다고 指摘했다.⁽⁵²⁾ 太政大臣은 이에 答하여 今日的 軍艦出動은 “定期的 練習航海”로서 특별한 意味는 없다라고 解明했었으나 後에 日本軍艦이 釜山港內에서 練習을 行했다고 詰問하자 三條大臣은 “誤報일 것이며 다시 이를 精査하겠다”고 辨明했다고 한다.⁽⁵³⁾ 이 軍艦派韓으로 1873年 日本의 反征韓論者였던 現政府 大臣들도 朝鮮征服 自體를 反對한 것이 아니라 그 時期와 方法과 主導權때문에 反對하였으며 征韓自體에는 兩派間에 異見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反征韓論의 日本政府는 1874年에 臺灣遠征, 그리고 1875年에는 軍艦의 朝鮮派遣이란 征韓遠征을 보냈다. 즉 日本은 兵力으로 威嚇하여 有利한 條件에서 一舉에 朝鮮問題를 解決하기로 決心하고, 그 解決策으로 軍艦을 朝鮮海岸에 派遣하여 所謂 雲揚號 事件을 일으킨 것이다.

(44) 田保橋, 前掲書, 上, p. 342.

(45) 同書, 上, p. 372.

(46) 同書, 上, p. 393.

(47) 大日本外交文書, 第8卷, pp. 71-72; 田保橋, 前掲書, 上, pp. 393-395.

(48) 田保橋, 前掲書, 上, p. 372.

(49) 同書, 上, pp. 372-373. 이 追加訓令은 廣津 副官이 5月 12日 釜山에 歸着하여 森山 理事官에게 傳達했다.

(50) 同書, 上, p. 395; 大日本外交文書, 第8卷, pp. 91-94; 130-132.

(51) 田保橋, 前掲書, 上, p. 395.

(52) 同書, 上, pp. 395-396.

(53) 同書, 上, p. 396.

Ⅲ. 韓國의 開國

1. 雲揚艦事件과 江華修好條約

前章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하여 艦長 井上良馨 海軍少佐 指揮下에 日本軍艦 雲揚號가 1875年 5月 25日 釜山에 入港했다.翌日 朝鮮側 代表 玄昔運은 日本公館을 訪問하여 日本軍艦의 豫告없는 突然入港을 問疑했다. 森山理事官은 日本政府가 “交渉延滯의 事由를 問疑하여 督促하기 爲해 來航”했다고 答했다.⁽¹⁾ 朝鮮側은 6月 30日 다시 日本公館을 訪問하고 韓日 國交再開交渉中 日本軍艦의 突然來航은 朝鮮官民에 疑懼心을 갖게 한다고 抗議했다. 森山는 軍艦은 外國派遣의 使臣을 護衛하고 海外留官員에게 命을 傳할때도 使用하므로 軍艦을 戰鬪用으로만 使用하는 것이 아니라고 說明했다.⁽²⁾ 그리고 6月 12日에는 軍艦 二丁卯가 釜山에 入港하여 朝鮮側이 抗議하자 日本側은 使事督促을 爲해 來韓했다고 答하고 雲揚·第二卯兩艦은 碇泊한대로 對韓 “威嚇”을 目的으로 演習을 行해 砲聲이 釜山·東萊를 震撼케 했다.⁽³⁾ 對韓 “威嚇”의 目的을 達成한 雲揚艦은 釜山을 出航하여(6月 20日) 東海岸을 北上하여 永興灣에 3日間 碇泊, 迎日灣을 거치 29日 釜山에 寄港했다가 7月 1日 長崎에 歸着하여 第1回의 測量 및 示威運動을 完了했다. 그리고 海軍省은 다시 “朝鮮東南海岸에서 清國牛莊邊까지 航路研究”라는 命을 雲揚艦에게 주었다. 이 命에 따라 井上艦長 指揮下의 雲揚艦은 9月長崎를 出港, 同月 19日 仁川月尾島沖에 碇泊했다가 翌 20日 草芝嶺의 砲臺까지 接近하여 朝鮮側의 砲擊을 받았다. 雲揚艦은 同嶺을 攻擊하고 上陸하여 同嶺의 砲臺를 破壞하고서는 永宗嶺을 占領하고 民家를 燒棄하고 戰利品을 가지고 28日 長崎에 歸還했다.⁽⁴⁾ 井上艦長의 報告는 探水를 爲해 此地에 上陸하려했다가 被擊當해 “不得已” 上陸하여 同嶺을 破壞했다고 했는데, “探水”가 電信暗號의 解讀의 잘못으로 “測量”으로 되었다고 한다.⁽⁵⁾ 이 雲揚艦事件을 日本은 探水 또는 測量 이라는 “口實”⁽⁶⁾을 쓰고 있으나, 그 實은 韓國에 對한 示威였으며⁽⁷⁾ 軍艦派遣은 上記의 森山와 廣津의 軍艦派遣建議⁽⁸⁾에 依한 것이며 이 建議書가 바로 測量을 하며 韓國內訌을 利用 하여 交渉을 爲한 示威를 한다는 것이었다.

(1) 大日本外交文書, 第8卷, pp.92-93; 小松祿, 伊藤博文傳, 中卷, pp.1-20; 田保橋,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 p.397.

(2) 同上.

(3) 同上, 樞山專太郎, 征韓論實相, p.258; 黑龍會編, 西南記傳, 上卷, p.329.

(4) 大日本外交文書, 第8卷, pp.119-166; 田保橋, 前掲書, 上卷, pp.397-401; 渡邊, 朝鮮 開國外交史研究, 第2編 參照.

(5) 井上船長의 川村海軍大輔에 보낸 報告書, 1875年 9月 28日字, 長崎에서, 田保橋, 前掲書 上, pp.400-401.

(6) 渡邊, 前掲書, p.167.

(7) 쥬코프, 極東國際政治史(日譯), 上, p.98; 菊池謙讓, 近代朝鮮史, 上, pp.325-326.

(8) 大日本外交文書, 第8卷, pp.71-72. 政府의 決心을 促求한 森山의 寺島外相에게 보낸 意見書(1875年 7月 16日)는 大日本外交文書, 第8卷, p.102 參照.

이 日本이 誘發시킨 雲揚艦事件을, 日本人 菊池謙讓은 “絶好의 口實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表現했으며.⁽⁹⁾ 이 問題를 研究한 日本人學者 渡邊는 이 事件을 아래와 같이 解釋했다. 即, 雲揚艦事件의 “內面을 仔細히 探索하면” 同事件은 森山の 建議에 依하여 全的으로 “朝鮮 示威”를 爲한 것이며, “水路測量 같은 것은 單純한 口實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이 生覺된다.” 그리고 雲揚艦의 派韓은 森山の 建白書에 刺戟받아 軍部가 일을 敢行하였으며, 雲揚艦의 被擊은 朝鮮側으로 부터의 “突然不意의 砲擊”이 아니라 “豫期所望의 砲擊”이었다. 砲擊을 當하는 것은 豫期했던 것이며 또한 所望한 것이었던 것과 같이 生覺된다.”⁽¹⁰⁾라고 했다.

日本政府는 이 事件을 하늘에서 떨어진 “好下物”로 받아들이면서, 이로써 “우리는 天子에 奉答하고 아래로는 萬民에 報答할 날이 왔다.”라고 즐거워 했다.⁽¹¹⁾ 그리고 大久保·岩具等 政府 指導者들은 곧 陸海軍鄉民과 協議하여 出兵의 準備를 하게 했다.⁽¹²⁾ 이때의 日本政府는 韓國과 條約을 締結하고, 中國과는 宗主權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韓國에는 黑田清隆 指揮下에 大艦隊를 派遣하고 中國에는 森有禮를 派遣하기로 했다. 外交的으로 日本은 雲揚艦事件의 口實을 西方外交代表들에게 說明하면서, 韓國이 攻擊하였으므로 이 事件의 責任은 韓國이 져야하고 日本은 西洋諸國이 失敗한 韓國을 開國시키겠다고 말했다.⁽¹³⁾ 그리고 12月 1日 日本의 廣津 理事官은 東京을 떠나 釜山에 17日에 到着하여 黑田의 江華島來航을 朝鮮側에 通告했다.⁽¹⁴⁾ 이렇게하여 韓國에 오게된 特命全權辦理大使인 黑田 中將은 井上馨副大使와 宮本小一, 森山茂等 隨行員 30名과 800名兵員의 軍艦 6隻을 거느리고 1876年 1月 末頃 釜山 近海에 投錨했다가 2月 4日 江華島에 寄港하고 10日에는 兵員 300名을 거느리고 仁川에 上陸했다.⁽¹⁵⁾ 黑田大使의 出航前 日本外相 寺島는 駐日美國公使 Bingham과 面談하여 그의 助言을 求했으며, 黑田의 派韓에 日本은 自身을 開國 시킨 Perry 提督의 “遠征記”를 參考로 使用하였다.⁽¹⁶⁾ 即 日本은 美國이 그들에게 使用한 戰術을 韓國에서 使用한 것이다.⁽¹⁷⁾

太政大臣三條는 韓國으로 떠나는 黑田全權大使에게 訓令(1875年 12月 9日)을 주었다. 그 內容은 韓國과 和約을 맺되, 朝鮮側이 修好通商條約에 應하면 그것으로 雲揚艦의 “賠償”으로 看做하고 萬一 朝鮮側이 이 事件의 責任을 回避하고 “舊交를 繼續할 誠意를 表示안하면” “臨機處分할 事”라고 하고, 和約條件으로는 兩國間의 “永久의 親睦”, 貿易, 開港, 航行權, 漂民 扶助護送, “使臣在留”등을 包含시키기로 했다.⁽¹⁸⁾ 이 訓令은 朝鮮政府가 和約

(9) 菊池, 前掲書, 上, p. 340.

(10) 渡邊, 前掲書, p. 169.

(11) 菊池, 前掲書, 上, 340. 菊池謙讓의 말을 引用함.

(12) 同上.

(13) 大日外交文書, 第 8 卷, pp. 139-140; Denobler, *op. cit.*, p. 25.

(14) 大日本外交文書, 第 9 卷, p. 23.

(15) 大日本外交文書, 第 9 卷, pp. 7-8, 24, 49.

(16) Conroy, *Japanese Seizure of Korea, 1868~1910*, p. 62.

(17) W.O. Reischauer, *Japan Past and Present*, p. 135.

에 應할 時의 條件이며, 萬一 朝鮮側이 이러한 基本訓令條件을 拒絶할 時는 아래와 같은 條件의 “內諭”에 따라 黑田大使가 行動하도록 되어 있었다. 卽

第 1. 使節에 對해 “侮辱”을 加한다든가 日本使節을 認定치 않고 “暴舉”를 加할 時는 “適當히 防禦하고 一旦 對馬島로 退去하여 本國政府에 請訓할 것”

第 2. 使節을 接遇하지 않고, 暴行도 加하지 아니하나 全權과의 交涉을 一切拒否할 時에는 “우리의 隣誼를 重히 여기고 和平을 主로하는 好意를 不認하는 그 罪를 責하고” “我政府”의 別途의 處分이 있을 것이라는 內容의 一書를 던지고 速히 其內容을 報告하여 復命을 기다릴 것.

第 3. 新條約締結에는 淸國의 命을 받는다곤 하여 回答의 遲延을 圖謀할 時에는 兩國의 舊交는 淸國의 仲介가 없었으니 日本은 “直接” 朝鮮政府에 對하여 江華의 辨償과 將來의 條約을 要求할 것. 萬一 朝鮮政府가 淸國에 間疑한 後에 日本의 要求에 應하겠다고 하면 “其往復間 高城에 日本의 兵隊를 駐屯시키고 江華城을 占有하여 公法의 所謂 強償의 方法을 行할 것이라는 難題를 發하라.”⁽¹⁸⁾

이 當時 韓國에서는 많은 變化가 일어났다. 9年間 執權한 鎖國政策의 大院君이 물러났고,⁽²⁰⁾ 大院君과 그의 政策을 反對한 閔妃派가 得勢하였으며,⁽²¹⁾ 中國으로 부터는 戰爭없이 日本과 和約하라는 勸告가 오고 있었고,⁽²²⁾ 國論은 開國을 둘러싸고 分裂되고 있었으며, 政府는 日本軍艦의 示威, 空砲, 威脅에 緊張하고 不安하고 있었다.⁽²³⁾ 當時 中國의 李鴻章은 萬一 韓日間에 戰爭이 벌어지면 朝鮮은 쉽게 敗할 것이며, 그렇게되면 中國의 宗主權이 侵害當할 뿐만 아니라 東三省 卽 滿洲의 “根本要地”의 安全까지 憂慮되므로 朝鮮政府에 平和의 으로 日本과의 問題를 解決하도록 勸告하라고 總理衙門에 主張했다.⁽²⁴⁾ 이러한 朝·中 兩國의 國內의 狀況에 日本은 좋은 機會에 雲揚艦事件을 일으켰으며, 韓國의 國內外 情勢는 實로 日本에 有利한 時機였다. 그렇게 強力하게 버텨오던 韓國의 鎖國政策은 大院君의 沒落과 閔妃派의 擡頭로 開國쪽으로 기울었으며, 中國의 戰爭回避와 開國勸告는 朝鮮의 國王과 大臣들에게 影響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日本軍艦의 示威와 威脅은 不安을 造成시켰으며, 日本의 韓半島 進出은 明治 政府의 確固한 政策이 되었으며 이제 이 大陸進出政策을 強行할 時期에 온 것이다. 國際의 으로 東北亞의 韓·中·日 三國中 韓國만이 繼續 “隱遁의 나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時代는 지났다. 1860年代의 美國은 南北戰爭, 獨·伊兩國은 統一戰爭, 英·佛·露三國은 亞細亞進出等으로 韓國의 鎖國은 可能했다. 그리고 日本도 德川幕府와 明治維新派의 鬭爭으로 國內의 으로 複雜한 時期였다. 그러나 1870年代에 와서는

(18) 大日本外交文書, 第 8 卷, pp. 144-147 參照.

(19) 同書, p. 147.

(20) 大院君 沒落의 國內의 背景과 狀況은 李瑄根, 韓國史 最近篇, pp. 342-367 參照. 日本의 強硬派 指導者 西郷도 同年 가을에 下野했다.

(21) 閔妃派의 得勢는 同上 參照.

(22) 大日本外交文書, 第 7 卷, pp. 362-365 參照.

(23) 李瑄根, 前揭書, pp. 367-386 參照.

(24) 李鴻章의 總理衙門에 보낸 書翰(陰 1875年 12月 23日), 王藝生, 日支外交六十年史(日譯), 1卷, pp. 133-134.

情勢가 달라졌다. 美國은 南北戰爭을 終結짓고 韓國에 遠征까지 보냈으며 獨·伊兩國은 統一을 完遂하고 海外進出에 關心을 돌리게 되었으며, 英·佛·露等은 亞細亞에서 그들의 勢力과 利權을 擴大하려하고 있었다. 特히 日本은 明治維新(1868)을 契機로 새로운 帝國日本이 되어 大陸進出의 膨脹主義 政策을 始作했다. 即 1870年代의 國際情勢는 韓國의 鎖國을 더 以上 許諾하지 않을 狀況이었다. 이러한 國內外的 理由에서 朝鮮政府는 2月 18日(陰 1月 24日) 日本과의 通商條約을 締結할 것을 決定하고, 接見大臣에게 指示하기를 “我國과 日本은 3百年 동안 信使修睦하고 設館互市해 온 터이라, 비록 數年以來로 書契를 가지고 相持하였으나 繼續修好하는 마당에 있어 通商을 牢拒할 必要도 없는 것이니 通商條約等의 節次를 爛加商確하여 兩國이 互相便宜케하라”라고 했다. 그리고 翌日에는 時日의 遷延을 避하기 爲해 “隨事裁斷하라”는 權限까지 委任하였다.⁽²⁵⁾

이와 같이 하여 韓國側은 申櫓과 尹滋承을 正·副大臣으로 任命하여 日本側의 交涉에 應하게 한 것이다.⁽²⁶⁾ 그러나, 韓·日 兩國사이에는 護衛兵, 會談場所, 八戶順叔, 書契不受, 雲揚艦의 發砲, 旗號, 處罰, 그리고 交涉代表權 等の 問題를 둘러싸고 2月6日과 11日에 論議와 論爭을 했다.⁽²⁷⁾ 11日의 第一次 正式 會談에서 兩側은 主로 雲揚號事件, 代表權 및 修交問題 等을 論議했다. 雲揚艦事件에 對해 日本側은 同艦이 中國牛莊으로 向하던 中 朝鮮國境을 지나게 되자 朝鮮人이 砲擊을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朝鮮側은 禁止된 國境內에 同艦이 入境하였으며, 同艦이 어느나라의 所屬인지도 몰랐으며 “防守之處를 直進”하였으므로 戍兵이 不得已 發砲했으며, “故意로 한 것이 아니”라고 說明했다.⁽²⁸⁾ 翌12日의 第二次 會談에서 日本側은 13個條項에 達하는 條約草案을 朝鮮側에게 提示했다. 朝鮮側이 中央政府의 指示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라고 하자, 日本側은 10日 以上 經過되도 確答이 없으면 交涉은 끝난다고 警告했다.⁽²⁹⁾ 翌 13日의 三次 會談에서 朝鮮이 確答을 回避하고 條約交涉을 주저하자 日本側은 “此事” 即 條約交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는 兩國의 不幸으로 或 後悔할 일이 生길지도 모른다. 我國軍民으로 屯聚全力하여 貴國에 出來코저 하는 者 아직도 解散하지 않고 있으니, 萬一 失和之境에 이른다면 我兵下陸之弊가 生길는지 모른다”라고 威脅했다.⁽³⁰⁾ 即 萬一 朝鮮側이 日本側要求를 拒絶하면 日本은 兵員을 仁川, 富平地方에 下陸 시

(25) 高宗實錄, 卷之十三 高宗 十三年 丙子 正月 二十四日 및 二十五日, 李瑄根, 前揭書, p. 396에 引用.

(26) 高宗實錄, 高宗 13年 丙子 正月 初四日, 李瑄根, 前揭書, p. 385.

(27) 高宗實錄, 倭使日記 等を 使用한 田保橋, 前揭書, 上, pp. 455-462 및 李瑄根, 前揭書, pp. 386-389 參照. 2月 11日會談(第一次會談)은 菊池, 前揭書, 上, pp. 369-375. 八戶順叔事件은 日本九州出身인 八戶가 香港에서 日本의 派韓使節 計劃(1867)을 誇張하여 廣東發行의 中外新聞에 日本의 韓國侵攻說을 投書한 事件을 말함.

(28) 同上 參照.

(29) 田保橋, 前揭書, 上, pp. 462-466(主로 朝鮮交涉始末, 倭使日記, 日省錄, 使鮮日記 利用); 菊池 前揭書, 上, pp. 375-380 參照.

(30) 高宗實錄, 卷之十三 高宗十三年 丙子 正月二十四日, 李瑄根, 前揭書, p. 393에 引用.

켜 軍事的行動을 取하겠다는 말이다. 朝鮮側은 이에 對해 “남의 나라에 들어와 其邦禁을 묻지 않고 스스로 無難하게 下陸할 수 있는가……防守之處에 接近하였다가 彼我間 意外之患이라도 생긴다면 이 어찌 念慮할 바가 아니냐, 貴船이 事端없도록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라고 하면서 日本側要求를 拒絶했다. (31)

이와같이 韓·日交涉이 難關에 逢着하자, 日本側代表는 交涉을 斷念할 氣勢도 取하였으며, 朝鮮側은 政府內의 開國贊反兩論으로 決定을 짓지 못하고 있었다. 大院君一派와 崔益鉉 等 一部儒林들은 斥和論을 主張한 反面, 右議政 朴珪壽, 李最應, 閔奎鎬 等 閔妃派의 大部分은 開國論을 主張했다. 그러므로 朝鮮側交涉代表는 日本側代表의 要求에 뚜렷한 案을 提示하거나 確固한 態度를 取하기는 困難한 立場에 놓여 있었다. 그러던 차에 世子冊封使 李裕元이 淸國에서 歸國하여 開國을 主張하고 中國의 李鴻章의 勸告도 있고 하여 國王高宗도 開國을 贊成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韓國이 結局 開國을 決定하게 된 理由로서는 日本側의 膨脹主義와 軍事示威, 韓國側의 國內의 分裂, 中國의 勸告, 그리고 鎖國維持가 더욱 困難해진 國際的 狀況 等의 要素들이 作用한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韓國의 鎖國이 무너지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新興日本”의 侵略政策이 큰 役割을 했다. (32)

이렇게 하여 韓國의 鎖國은 무너지고, 韓·日 兩國은 修好通商條約을 締結하게 되었으나 條約締結批准問題로 日本側은 會談을 一時 決裂 시켰다. (33) 條約 批准에 關해 日本側은 君主의 署名鈐印을 主張하였으며 朝鮮側은 “允”이라는 一字를 主張했다. 結局 妥協으로 國王의 親書 代身 “朝鮮國王上之寶”를 新鑄使用하고 調印과 批准交換을 같은 時日에 舉行키로 했다. (34)

日本側 代表인 黑田와 井上 正·副全權이 批准의 形式을가지고 會談을 中斷까지 시킨 理由는 條約効力發生에 必要한 法的手段과 再締約國元首의 親書を 必要로 하는 慣例에 依한 것으로 生覺된다. 그러나 日本自身이 日米修好條約批准(1855年)에 “左大君主命에 依해”라는 一句로 將軍親署를 代身한 事實에 비추어보면 黑田全權의 “高壓의 態度”가 꼭 必要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35) 黑田全權이 一時 江華島를 떠난 後 朝鮮側 申德과 尹滋承 正·副 代表는 日本側 井上 副全權과 批准形式을 協商·合議하여 黑田 全權을 包含한 兩國代表는 2月 26日 江華島鍊武堂에서 12個條項의 條約을 調印하고 批准書를 交換하였다. 이제 韓日江華條約內

(31) 同書, pp. 393-394에 引用; 田保橋, 前掲書 上, pp. 467-480 參照.

(32) 旗田, 朝鮮史, 東京, 岩波書店, 1952, pp. 165-166.

(33) 日本外交文書, 第9卷, pp. 99-103 參照; 田保橋, 前掲書, p. 495. 黑田全權大使는 江華島를 退去하고 井上은 殘留하여 交涉을 繼續했다. 黑田는 他日 “自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一言을 남기고 退去했다(p. 498).

(34) 田保橋, 前掲書, p. 502. pp. 501-504參照.

(35) 同書, pp. 501-502. 日本이 最初로 締結한 日·美, 日·英, 日·露 條約들은 天皇의 裁可없이 이루어졌음으로 條約批准의 形式上의 問題와 効力發生의 法的問題가 擡頭될 수 있으나, 1855年 2月의 天皇의 裁可로서 이러한 問題들이 解決됐다. Griffs, *The Progress of Japan, 1853~1871*, p. 100; in Treat, *Diplomatic Relations...*, Vol. I, p. 35.

容을 살펴보면, 日本側은 2月 12日의 會談에서 13個條項의 提案을 하였는데 朝鮮의 自主平等權, 使臣의 駐劄, 往復公文의 用語, 釜山草梁開放, 2個港追加開放, 船舶의 海難救助, 日本國航海者의 韓國海岸自由測量, 日本의 領事官派韓, 通商章程, 最惠國條款, 調印規定等を 包含했다.⁽³⁶⁾ 朝鮮側은 條約序文의 “皇帝”와 “國王”을 反對하고 國號만 使用할 것을 主張했다. 그러나 自主獨立, 一方的治外法權은 承認하고 使臣駐劄과 通商章程은 不必要하며 永興府의 開港은 不可能하다고 했다. 그리고 常平鐵不許容, 米穀交易禁止, 他國人之 混來雜處禁止, 物物交換의 交易, 外上先賣, 散債, 取息의 禁止, 阿片 및 天主教禁止, 亡命政黨人之 回送等を 提議했다.⁽³⁷⁾

이러한 日本側의 提案과 朝鮮側의 提議로 이루어진 것이 12個條款으로 된 江華 또는 丙子修好條約이다. 이 1876년에 締結된 韓·日 條約에는 (1) 韓·日修好條規(2月 26日調印), (2) 韓·日 修好條規附錄(8月 24日), 그리고 (3) 韓·日貿易規則인 韓·日通商暫定協約(8月 24日)이란 3個의 條約이 包含되어 있다. 主로 政治에 關한 條約인 韓日修好條規는 朝鮮側의 申·尹 兩者와 日本側의 黑田·井上 兩代表에 의해 調印되었으며, 그 序文에서 兩國은 “大朝鮮國과 大日本國은 元來 友誼두텁게 歲月을 經過하였다. 至今 兩國의 情意未恰함을 보게 되므로 舊好를 重修하여 親睦을 굳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고 第一款에서 “朝鮮國은 自主國이며 日本國과 平等한 權利를 保有한다……”라고 했다. 第二款을 “只今부터 15個月後 언제든지” 兩國은 使臣을 相對國에 (서울 또는 東京) 派遣할 수 있으며 該使臣이 留滯하든지 直時歸國하든지 그것은 “時宜에 依할 것이다.”라고 했다. 第三款은 往復公文의 用語로서 “日本은 그 國文을 使用하되 此後 10年間은 譯漢文한 通을 添付하며 朝鮮國은 眞文을 使用할 수 있다.” 第四款은 釜山 草梁을 開港하고 이 外에 二個港을 開港하고 “日本人이 往來通商함을 許可한다. 이 場所에서 地面을 賃借하여 家屋을 造營하며 또는 所在의 朝鮮人民의 家屋을 賃借함은 各其 隨意에 맡긴다.” 第五款은 20個月後에 京畿·忠淸·慶尙·全羅·咸鏡 “五道의 沿海中 通商에 便利한 港口 2個所를 擇한 後 地名을 指定 할 것이다.” 第六款은 船舶의 遭難救助로서 朝鮮人은 遭難船員의 寄泊, 所要品의 購入과 購得, 救恤의 手續, 護送, 引渡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第七款은 “日本國航海者가 自由로 海岸을 測量함을 許可”한다. 第八款은 日本領事館을 “朝鮮의 指定各港에 時宜에 따라” 設置한다. 第九款은 兩國人民은 “各自任意로 貿易한다.” 第十款은 領事裁判權으로 “日本國人民이 朝鮮國指定의 各港에 在留中 萬若 罪科를 犯하고 朝鮮人民에게 關係되는 事件은 모두 日本國官員이 審議할 것이다. 萬若 朝鮮國人民이 罪科를 犯하고 日本國人民에게 關係되는 事件은 모두 朝鮮國官員이 查辦할 것이다…….” 第十一款은 6個月 以內에 兩國은 商議 即 通商章程을 決定케 한다. 第十三款은 上記 11款의 條約은 “本日부터 兩國이 信守 遵守한다. 兩國政府는 이

(36) 申基碩, 東洋外交史, 서울, 東國文化社, 4288, p. 169. (日使文字卷 1; 中外爛報에 依함).

(37) 同書, pp. 169-170.

(38)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舊韓末條約彙纂, 上, pp. 9-16; 日本外交文書, 第 9 卷, pp. 11-119.

를 다시 變革할 수 있으며 永遠히 信遵하여 兩國의 和親을 두텁게 할 것이다……”라고 했다. (38) 그리고 同年 8月 24日에 趙寅熙와 宮本小一에 의해 調印된 韓·日 修好條規附錄은 11條款으로 되어있으며 第一款에서 日本官吏가 “日本船이 遭難하여 緊急을 要할때는” 地方官에게 告하고 該地 即 遭難地에 갈 수 있는 “道路를 經過할 수 있다”라고 했다. 第二款은 日本使臣 및 管理官이 發하는 文移書信의 郵送費用은 “事後辨償”하고 “또는 朝鮮國人民을 雇用하여 專差할 수도 있으니 其從其使 할 것이다.” 第三款은 “議定한 朝鮮國 通商各港에 있어서 日本國人民의 地基를 租賃하여 往來함은 各其地主와 相議하여 그 價格을 定한다…….” 第四款은 釜山港에서 日本國人民은 “防波堤로부터 起算하여 東西南北 各直經 10里로 定한다. 東萊府에서는 里程以外라 할지라도 特別히 往來할 수 있다. 이 里程內에서 日本國人民은 自由로 通行하고 其他의 產物 및 日本國產物을 賣買할 수 있다.” 第五款은 各港에서 “日本國人民은 朝鮮國人民을 賃雇”할 수 있다. 第六款은 日本人의 死亡時 “適宜의 地處를 選拔하여 埋葬할 수 있다…….” 第七款은 日本國人民은 日本諸貨幣를 使用할 수 있으며 “朝鮮國의 銅貨幣를 使用運輸할 수 있다…….” 第八款은 “朝鮮國民은 日本國民으로부터 買得한 貨物 或은 贈與를 받은 諸物品을 自由로 使用 하여도 無妨하다.” 第九款은 日本 測量船의 遭難을 救助한다. 第十款은 諸國의 船舶의 遭難時에 朝鮮政府는 “各港口 駐留日本管理官에게 遞致하여 本國으로 送還한다…….” 第十一款은 上記의 “章程 및 이에 添付한 通商規則은 모두 修好條規와 同一한 權利를 가진다.”라고 했다. 그리고 同日에 같은 趙·宮本가 調印한 韓日貿易規則(韓國通商暫定 協約)에서 兩國은 貿易의 節次(1—5則), 糧米雜穀의 輸出入(6則), 阿片의 販賣禁止(10則), “日本政府에 所屬하는 諸船舶은 港稅를 納付하지 않는다”(7則) 等에 合議했다. (39) 그리고 同日 趙寅熙는 宮本에게 보낸 書翰에서 “貨物出入은 數年間免稅를 特許하자는 것임”이라고 했다. (40)

1876년에 調印된 上記 三個의 條約을 簡單히 分析해 보면, 條約 第1條의 朝鮮의 “自主” “平等”은 日本이 強調하였으며, 그 理由는 韓·中關係의 宗主問題를 解決하여 中國을 朝鮮에서 分離시켜 日本의 韓半島進出을 容易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第4—5條의 釜山과 2個의 開港은 結局 南端의 釜山, 東海의 元山, 그리고 西海의 仁川으로 決定되었으며, 이들 三個港口들은 韓半島를 包圍하는 經濟的, 戰略的, 軍事的 面에서 重要한 港口들이다. 朝鮮側은 元山은 李朝의 寢廟所在地인 永興과 가깝고, 仁川은 首都서울에 가깝다고 反對했으나 結局 日本側의 要求에 應했다. 露國軍艦의 元山(永興灣)來航, 佛·美兩國의 仁川 附近의 江華島 遠征, 日·美等の 釜山東萊來航과 開國交涉는 이들 三個港口의 重要性을 잘 말해 준다고 했다. 그리고 西洋式의 治外法權을 第10條에 마련하고 第11條에서는 通商章程을 6個月後에

(39) 舊韓末條約彙纂, 上, pp. 100-117.

(40) 韓·日 貿易의 革幣와 關稅에 關한 趙寅熙·宮本小一間の 議定書(1876年 8月 24日), 舊韓末條約彙纂, pp. 117-120.

設立하도록 하여 司法主權의 制限과 經濟的 侵透와 侵略의 條項을 마련해 놓았다.

이 條項(條11則)에 따라서 6個月後인 8月 24日에 調印된 韓·日修好條約附錄 第7款에서 日本도 韓國에서 日本國貨幣를 使用하고 朝鮮銅貨幣의 使用連輸權을 얻었다. 即 日本은 經濟的으로 韓國을 侵略支配할 條項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第10款에서 日本外의 外國遭難民의 遞致送還을 日本의 管理官을 通하여 하게 함으로서 日本의 對外 威信을 높여주고 代身 朝鮮의 後進性을 認識시켜줄 수 있는 朝鮮側에 不利한 條項을 마련했다. 日本은 이 條項이 朝鮮이 아직 西洋諸國과 外交關係가 없어서 必要했다고 生覺했는지 모르나. 이러한 境遇 第三國의 도움이 꼭 必要했는지 疑心스럽다. 1866年 韓國은 美國과 外交關係가 없어도 Surprise號의 遭難者들을 救助保護하여 中國까지 無事히 歸還하도록 한바있다. 뿐만아니라 同日(8月 24日) 調印된 韓·日通商 暫定協約인 韓·日 貿易規則에서, 日本은 韓國에서 糧穀을 輸入하고 (6則), 日本政府에 所屬하는 諸船舶의 港稅免除를 받았다(7則). 即 日本은 韓國에서 糧穀과 銅貨幣를 輸入하고 日本의 商品을 免稅로 輸出하고 日本貨幣使用으로 韓國 經濟를 混亂에 빠지게 하고 韓國을 日本商品의 市場으로 만들게 한 것이다. 그리고 1882年 8月 30日에 調印된 韓·日 修好條規續約에서 釜山, 仁川, 元山 各港의 間行里程을 四方 各 50里로 하고 2年後를 期하여 다시 各 百里로 하고 楊花嶺을 同條規續約一年後를 期하여 開市場으로 하였다.⁽⁴¹⁾

朝鮮政府는 이러한 不利한 不平等條約 締結後 他國의 關稅制度를 알고 “至極히 當慌”하여 1878年부디 所定率의 貨物通關稅를 韓國人으로부터 徵收하기 始作했으나 日本側은 이에 抗議했다. 韓國側은 關稅를 “韓國商民에게 限하여 徵收하는 것이니 日本人들의 干涉할 바가아니다”라고 했다.⁽⁴²⁾ 그러나 開國後 滿 3年만에 日本은 關稅없이 韓國의 米穀과 金·銀·寶貨를 自意로 日本에 搬出하고 日本商品을 韓國에 輸出하고, “全韓國을 日本不換紙幣의 通用圈으로 만들고”, 鑛山採掘權을 얻고, 商人들을 通하여 韓國經濟를 侵蝕했다. 이러한 江華條約의 經濟的 影響에 關하여 旗田교수는 아래와 같이 適切히 말했다. 即 “江華條約에 基하여 朝鮮은 日本에 對하여 釜山(1876), 元山(1882), 仁川(1883)을 開港했다. 九州, 中國(四國?), 對馬島等의 日本人이 次次 朝鮮에 건너가 日本商品을 팔았다. 特히 低廉한 綿製品은 朝鮮市場을 獨占하였다. 一方 朝鮮으로부터 米 其他 食糧이 日本에 輸出되어 빠르게도 朝鮮은 日本에 對한 食糧供給地가 되었다. 國內의 商品生産은 極도로 낮아서 朝鮮은 日本 資本의 商品市場에 매워지게되는 것이었다. 朝鮮에는 새로운 걱정(惱)이 附加되었다.”⁽⁴³⁾

政治的으로 江華條約은 朝鮮의 自主, 獨立, 平等을 日本이 承認함으로써, 韓國은 數世紀 동안 “大國”과 “兄弟之國”으로 對했던 天國 即 天을 代表하는 中國으로부터 分離되는 契機

(41) 韓·日修好條規續約과 舊韓末條約彙纂 上, pp. 35-37. 本修好條規續約은 朝鮮側의 李裕元·金宏集 正·副權과 日本側 花房義實 辦理公使에 依해 調印되었다. 批准은 同年 10月 31日에 있었다.

(42) 舊韓末條約彙纂, 上, p. 111.

(43) 旗田, 朝鮮史, pp. 167-168.

를 만들었다. 이는 中華優越觀의 思想에 對한 日本의 挑戰이며 西洋文化를 받아들인 新日本帝國의 大陸進出의 初段階이기도 했다.⁽⁴⁴⁾ 이 條約에서 日本은 朝鮮의 自主·獨立·平等을 承認했으나, “이 條約의 目的한 바는, 第一은 長期동안 朝鮮을 支配하여왔던 淸의 宗主權을 打破하고, 第二는 關稅, 領事裁判權等으로 朝鮮의 自立性을 不定하는 不平等 條約을 強制로 맺게 하는 것이었다.”⁽⁴⁵⁾ 結局 이 開國條約으로 韓國의 中國에 對한 崇華·事大思想은 弱화되고 韓國에서의 日本勢力은 強化되고, 韓國은 새로운 充分한 理解나 準備없이 새로운 西洋式 國際關係를 始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日本勢力의 擡頭와 新文化의 導入은 親日 進歩派에 依한 近代化運動을 가져와 韓國은 複雜한 政治的 混亂을 갖게됐다. 이 混亂은 國際的으로 中·日兩國의 對立과 競爭으로 發展되었으며, 中國은 南으로부터의 日本勢力과 北으로부터의 露國勢力을 牽制하기 爲하여 美國을 韓半島에 끌어들이도록 하여 韓國은 이제 西洋에도 開國(1882)하게 되었다.

2. 韓美修好通商條約

이 章에서 우리는 主로 本論文의 主題目인 江華條約 即 韓·日條約을 說明하였다. 이제 다음 章에서 韓國의 開國과 國際關係를 論하기 前에 韓國이 最初로 西洋에 開國한 韓美條約을 簡單히 살펴보기로 한다. 韓日間에 江華島에서 修好條約의 締結되자, 美國은 韓國의 開國에 다시 關心을 나타냈다.⁽⁴⁶⁾ 日本政府로부터 韓日條約의 通告를 받은 美國은 韓·美條約을 可能하게 生覺하고 對韓政策에서 積極性을 띠게 되었다.⁽⁴⁷⁾ 그리하여 上海의 Seward 總領事는 1876年 3月 韓美條約交涉을 自願했으며,⁽⁴⁸⁾ Sargent 上院議員은 韓美條約 交涉을 爲한 全權任命을 1878年에 提議했다.⁽⁴⁹⁾ 同年 Shufeldt 提督은 國務長官과 海軍長官의 指示로 “朝鮮政府와 平和的으로 交涉을 再開”하여 可能하면 條約을 締結하기 爲하여 U.S. *Ticonderago*를 타고 世界巡航中 香港, 長崎를 거쳐 同年 5月에 釜山에 來航하였다.⁽⁵⁰⁾ 그러나 日本의 仲裁과 協力으로 韓·美條約을 交渉한 Shufeldt 提督은 韓國側의 反對로 失敗하였다.⁽⁵¹⁾ 當時 中國의 李鴻章은 特히 露國의 南進을 막기 爲한 “引美牽俄策”으로 Shufeldt 提督을 招請하여 韓美條約을 論議하고 韓國政府에 對해 美國과 條約을 맺을 것을 勸告했다.⁽⁵²⁾ 朝鮮의 高宗國王은 이때에 李東仁을 密使로 日本에 보내고 中國에는 代表를 보내어 情

(44) 日本學者 渡邊의 말과 같이, “들어켜보면 明治九年 締結된 日·鮮江華條約은 實로 島帝國日本이 亞細亞大陸에 勢力을 뻗치려한 第一步였다.” 渡邊, 朝鮮開國外交史研究, p. 389.

(45) 旗田綱, “明治期の日本と朝鮮,” *World Non-Fiction Series*, Vol.39, 附錄 p. 1.

(46) 董德模, 前掲書, pp. 20-21; Jones,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 pp. 176-183.

(47) Treat, *Diplomatic Relations...*, Vol. II, p. 24.

(48) *Ibid.*

(49) *Congressional Record*, 45th Congress, 2nd Session 2324, 2600-2601.

(50) *Cruise of Ticonderoga*, I, pp. 4-5; Shufeldt's Account in *Korean Repository*, Vol. I (1892), pp. 57-60.

(51) 董德模, 前掲書, pp. 21-25; Dennett, *Americans In Eastern Asia*, pp. 435-437; 日本外交文書, 第12卷, pp. 435-436; 第13卷, pp. 439-456; *Cruise Ticonderoga*, II, pp. 322-328.

(52) 王, 日支外交六十年史, 第1卷, pp. 160-167; 董, 前掲書, pp. 27-37.

報의蒐集과 交渉에 臨하게 했다.⁽⁵³⁾ 그는 中國人 黃遵憲의 “朝鮮策略”에서도 影響을 받은 것 같으며⁽⁵⁴⁾ 近代化와 韓國의 對西洋開放에 贊成했다. 中國 天津에서 있었던 數次에 걸친 中·美 交渉에서 韓國側 代表는 中國代表와 相談交渉하고 中國은 Shufeldt 美代表와 交渉하는 三角關係의 外交交渉을 벌인 끝에 結局 韓美條約이 韓國에서 1882年 5月 22日 韓美兩國 代表에 依해 調印되었다. 그러나 調印되기까지의 中·美 交渉에서 第一 큰 難點은 宗主權問題였다.⁽⁵⁵⁾ 中國은 韓美條約에서 宗主權 條項을 包含시키려 하였으며, 美國은 朝鮮을 獨立國으로 看做하여 宗主權條項 插入을 反對했다. 그리하여 數次에 걸친 協商 끝에 兩國은 妥協案으로 韓國國王이 같은 內容 即 中國의 宗主權認定의 照會文을 美國大統領에게 보내기로 合議를 보았다.⁽⁵⁶⁾

韓國側代表 申櫨과 美國側代表 Shufeldt에 依해 締結된 이 韓美條約은 14個條項으로 되어 있으며 “美合衆國과 朝鮮王國은 彼此人民間의 永遠한 親善友好關係를 樹立하기를 衷心으로 願”한다라고 했다. 이 條約 第一條에서 兩國은 “他國이 不公輕侮하는 일이 있으면 서로 助力保護하고 그것을 調停하여 友誼를 表示한다”라고 하였다. 이 居中調停條項의 英文原文을 翻譯하면 “萬一 他國이 相對國 政府에 對하여 不當하게 또는 抑壓的으로 行動할 때에는 相對國 政府는 그 事件의 通知를 받는데로 圓滿한 妥結을 가져 오도록 周旋을 다 함으로서 그 友誼를 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⁵⁷⁾ 그리고 나머지 條項들은 外交關係樹立, 遭難民의 援助, 領事裁判權, 關稅, 阿片貿易禁止, 仁川開港에서의 糧穀輸出禁止, 軍需品の 輸入禁止(書面上的의 許可에 限함), 土着人의 傭傭權利, 文化交流 및 最惠國待遇 등을 包含했다.⁽⁵⁸⁾ 이 西洋國에 最初로 門戶를 開放한 韓美條約은 여러 면에서 意義를 지니고 있다. 美國은 日本의 開國에 이어 또 하나의 東洋國家이며 “隱盾의 나라”로 알려진 韓國을 平和的으로 開國 시켜 外交的인 成功을 거둔 것이다. 東洋에 먼저 進出하여 中國을 開國시키고 韓國의 開國을 試圖했던 歐州國家 代身 亞米利加的 美國이 朝鮮을 開國시켰으며, 朝鮮은 開國後 國際적으로 美國에 希望과 期待와 그리고 信賴를 가지고 對했던 것이다.⁽⁵⁹⁾ 政治적으로 江華條約 第一條는 朝鮮의 “自主獨立”을 強調하여 朝·中의 傳統的 宗屬關係에 一大變化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韓·美條約 第一條의 “必須相助” 即 居中調整條項은 韓國의 對美依存

(53) 朴日根, “韓美條約에서 본 美·中의 對韓政策” 釜山大學校論文集, 第24輯, 人文社會科學篇 1977, I. pp.41-54 參照.

(54) 黃遵憲, 朝鮮策略(趙一文譯), 서울, 建國大學校出版部 1977, 參照.

(55) 董, 前揭書, pp.31-37.

(56) 同上.

(57) 舊韓國條約彙纂, 中卷, pp.294-305 參照.

(58) 同上.

(59) 特別 主權이 喪失된 露日戰爭과 Portsmouth 條約 當時의 朝鮮側의 對美外交와 1880年代의 韓美關係를 參照. McCune and Harrison, *Korean-American Relations*; Spencer Palmer, *Korean-American Relations*; Tyler Dennett, *Roosevelt and the Russo-Japanese War*; Dong, *Korea and the Russo-Japanese War*; *Current History*, Oct., 1924, pp.15-21; J.A. White, *The Diplomacy of the Russo-Japanese War*, Princeton U. Press, 1964; 小村, 外交史 等 參照.

外交를 가져왔다. (60) 그리고 韓美條約은 韓國을 中國으로부터 더욱 分離시키는 結果를 가져왔으며, 中國은 韓國에 對해 새로운 政策 即 干涉政策을 쓰게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美國의 韓國 開國은 歐州諸國의 韓國開國을 가져 왔으며 韓半島는 世界政治舞臺의 하나가 되어 日本, 中國, 英國, 露國, 美國 等の 政治的 및 經濟的 競爭地가 된 것이다. 그리고, 美國은, 美國學者 Bemis에 依하면, 結果的으로 朝鮮과 條約을 獨立國으로 締結함으로써 日本 膨脹主義者들을 도운 것이 되었다. (61)

韓美條約은 韓·美·中關係에 影響을 주었다. 條約 交渉에서부터 始作된 宗主權問題는 條約締結後에도 問題가 되어, 中國의 宗主權主張은 中·美 間에 外交的 論爭을 惹起시켰다. (62)

經濟的으로 朝鮮은 더욱 外國의 市場化가 되었으며, 朝鮮經濟는 外國의 資本에 隸屬되어 갔다. (63) 文化的으로 美國과 歐州의 西洋文化가 導入되었으나 韓國은 이러한 西洋·外交文化를 土着化시키지 못했다. 美國으로부터 들어온 基督教, 新教育制度, 新醫學 等은 韓國에 至大한 影響을 주었다. (64) 特히 開國으로 美國文化가 導入되어 近代化와 民主化를 試圖했던 獨立協會의 活動은 큰 意義를 가졌다. (65) 한편 中國은 開國後의 朝鮮을 繼續 中國勢力 下에 두기 爲해 袁世凱와 von Möllendorff 等を 派韓하여 韓國의 內政·外交·關稅를 干涉하고 (66) 通商規定 (67)을 通하여 政治的 및 經濟的 宗主權을 維持 또는 確立하려 했다. 이러한 中國의 韓國干涉은 開國後에 韓半島에 進出하는 外勢를 牽制하기 爲한 措置이며, 韓國에서의 外勢의 增大는 中國의 干涉을 더욱 甚하게 하여 日本이나 美國같은 나라의 反撥과 對抗을 받았다. 特히 大陸進出의 野心을 품은 日本은 中國과 韓半島에서 競爭을 하여 壬午軍亂과 甲申政變을 가져 왔으며, 結局 中國의 干涉과 宗主權問題는 淸日戰爭이란 武力手段에 依해 解決된 것이다.

IV. 開國과 國際關係

日本에서 征韓論이 擡頭하기 始作한 1871년에 日本과 中國은 天津에서 中·日修好條約을 締結했다. 李鴻章과 伊達宗城 兩全權에 依해 締結된 이 條約에서 中·日兩國은 서로의 領土

(60) Dennett, *op. cit.*, p. 461.

(61) Bemis, *A Diplomatic History of the U.S.*, p. 481; See Augustine Heard to Sec., of State, Seoul, July 10, 1890, No.29, Palmer,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 21.

(62) 1880年代의 *U.S. Foreign Relations*의 韓美關係는 McCune & Harrison, *Korean-American Relations*와 Palmer의 *Korean-American Relations*, Harvey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等を 參照.

(63) 旗田, 朝鮮史, pp. 167-168.

(64) George Paik, *A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70 參照.

(65) 慎鍾廈, 獨立協會研究, 서울, 一潮閣, 1976 參照. 독립신문(*The Independent*)는 英·한글로 週三回 發刊하였다(1896~1898).

(66) 董, 前揭書, pp. 67-72.

(67) 1882年 9月의 “韓濟商民水陸貿易章程”과 1883年 3月의 “奉天與朝鮮邊及交易章程,” 舊韓末條約彙纂, 下卷, pp. 384-421 參照.

를 조금도 “侵越하지 않고 永久安全”을 얻게 하고, 他國으로부터 不公平 또는 輕藐같은 일이 있을 때는 서로 相助하여 또는 “居中調停”에 依하여 反誼를 表한다라고 했다.⁽¹⁾ 이 相互相助와 居中調停의 條項을 여러 國家代表들은 中·日同盟으로 解釋했다. 駐日美國公使 De Long은 自己와 다른 外國代表들이 中·日同盟은 “不幸”할 일이라고 生覺하고 그 同盟條項을 除去하려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開化된 國家”들은 中國과 衝突한다던가 또는 “우리의 韓國과의 問題⁽²⁾가 擴大되고 增加”된다면 日本을 同盟國으로는 歡迎하나 敵으로는 무서워 해야 할 나라라고 보고했다.⁽³⁾ 이에 對해 國務長官 Hamilton은 De Long 公使에게 日本을 中國의 閉鎖政策에서 分離시켜 列國과 “自由로운 交易과 社會的 接觸”을 갖게 하라고 했다.⁽⁴⁾ 日本에 同情的인 De Long 美公使의 中日同盟에 對한 恐怖는 當時의 狀況으로 보아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었다. 中·日兩國은 相互相助한다 해도 韓國, 琉球等으로 對立하고 있었으며, 日本의 膨脹主義와 大陸進出은 自然히 中國과의 對立과 衝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日本의 膨脹主義는 當時擡頭되던 征韓論에서 잘 나타나 있었으며, 1872年 11月 De Long은 中國政府에 報告하기를 日本은 곧 가장 野心的인 軍事的 行動을 取해서 韓國과 臺灣에 遠征을 보낼 것이라고 하고, 日本은 이 計劃된 戰爭에서 露西亞의 中立을 얻기 爲해 露西亞人들에게 아첨하고 있다라고 했다.⁽⁵⁾ 日本은 De Long 公使가 紹介한 Charles W. Le Gendre(駐廈門美領事)를 北京行 使節의 顧問으로 採用하고, 日本이 臺灣과 戰爭할 때는 그를 日本軍의 將軍으로 만들고, 日本이 臺灣을 永久히 所有할 때는 臺灣總督에 任命 하기로 同意했다 한다.⁽⁶⁾ De Long公使는 이러한 協定은 日本을 더욱 中國으로부터 分離시켜 國內적으로 分裂을 막고, 臺灣과 그리고 可能하면 韓國까지 西洋 國家에 贊成하는 國家 即 日本의 깃발아래 두게 될 것이라고 生覺했다.⁽⁷⁾ 日本指導者들은 韓國은 地理적으로 日本의 “第一段階이며”, 日本은 “安全”을 爲해 臺灣과 韓國을 支配하여야 한다고 믿었던 模樣이다.⁽⁸⁾ 征韓論者였던 副島는 1872年 11月에 天皇에게 中日條約批

(1) 中·日條約(1871年 7月 29日) 第1條와 第2條, 王, 日支外交六十年史, I, pp.65-66. 條約全文은 pp.65-70; 葛生能久, 日支交渉外交, I, pp.26-46. See T.F. Tsiang, “Sino-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1870~1894”,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XVII (April, 1933), No.1, pp.9-15.

(2) 美國의 *General Sherman*號事件과 1871年 韓國遠征을 가리키는 것 같음.

(3) *Japan Despatches*, Vol.18, July 6, 1871, Dennett, *Americans in Easteres Asia*, p.438.

(4) Sec. of State Hamilton Fish to Minister De Long, Dec. 30, 1872, *U.S. Foreign Relations*, 1873, p.567; Dennett, *op. cit.*, p.438.

(5) De Long to Fish, Nov. 21 and 21, 1872, *Japan Despatches*, Vol.21, Jones, *Foreign Diplomacy...*, pp.90-91; *Donnett, op. cit.*, p.440.

(6) Dennett, *op. cit.*, Jones, *Foreign Diplomacy...*, pp.91,99. Charles W. Le Gendre는 佛蘭西 胎生으로 美國女와 結婚하여 美國의 市民이 되어 南北戰爭時 小將으로 服務하였으며, 駐廈門領事로 일한 바 있음.

(7) *Japan Despatches*, Vol.21, Nov. 22, 1872, Dennett, *op. cit.*, p.440.

(8) Ernest L. Presseisen, “Roots of Japanese Imperialism: A Memorandum of General Le Gendre,” *Journal of Modern History* XXIX (June, 1957), pp.108-111. See Conroy, *Japanese Seizure of Korea*, 1868~1910, pp.108-111.

准交換을 爲한 全權으로 自己를 任命할 것을 嘆願하여 翌年 3월에 正式으로 任命되어 北京으로 向했다. 그는 Le Gendre 顧問을 同伴하고 北京에 가서 內幕의 으로 琉球, 臺灣, 韓國問題 等を 解決하려 했다. 即, 琉球를 支配하고, 臺灣에 遠征을 보내고 韓國에서의 中國의 宗主權否認을 얻어내는 것이었다.⁽⁹⁾ 그러나 副島는 이와 같은 問題에서 中國의 承認을 얻는데 失敗했다. 中國은 琉球와 臺灣에 對한 日本의 主張을 拒否하고, 韓國에 對해선 內治·外交에 干涉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中國의 對韓 “責任回避”를 日本은 韓國에 使節이나 軍隊를 派遣해도 中國은 干涉하지 않을 것이라는 “保障”으로 看做했다.⁽¹⁰⁾

征韓論派가 1873年 10月の 閣議에서 敗北하자 日本은 翌 1874年에 臺灣에 遠征을 보냈다.⁽¹¹⁾ 日本의 臺灣遠征을 본 中國은 朝鮮에 對해 日本의 侵略을 警告하면서 西洋諸國과 友好關係를 맺을 것을 勸告했다.⁽¹²⁾ 이때 日本은 雲揚艦事件을 契機로 韓·中間의 宗屬關係를 明確히 하기 爲해(即 中國의 宗主權否認을 얻기 爲해), 森有禮를 駐淸公使로 任命했다. 北京에 到着한 森有禮는 中國政府에 日本은 韓國을 獨立國으로 看做하고 交涉하겠다는 覺書를 手交했다.⁽¹³⁾ 同時에 日本政府는 韓國에 黑田와 井上을 派遣하여 雲揚艦의 責任을 묻고 通商條約을 締結토록 했다. 中國은 韓半島가 滿洲와 中國大陸의 安全에 重要하더, 日本은 韓國에 進出하려 하고 있고, 韓國은 自體防禦나 鎖國이 困難하니 韓國에서의 雲揚艦事件을 平和裡에 解決하려고 했다.⁽¹⁴⁾

日本이 韓國進出을 爲해 惹起시킨 雲揚艦事件은 이와 같이 韓·中·日 關係로 發展되었으며, 그 主要問題는 韓·中의 “宗屬關係” 또는 “朝貢關係”였다.⁽¹⁵⁾ 當時 雲揚艦事件으로 西洋國들은 韓·日間에 戰爭이 發生하지 않을가 生覺했다.⁽¹⁶⁾ 그래서 이러한 杞憂를 意識한 寺島外相은 駐日外國使節들을 招請하여 朝鮮과의 交涉經過와 日本의 派使意圖가 航海貿易의 安全을 圖謀하는 것이라고 說明하고 그들의 諒解를 求했다. 面談에서 駐日 露國公使는 寺島外相에게 “貴國은 朝鮮과 무슨 約束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寺島外相은 이에 對해 “約束이 없다. 만약 淸國政府가 韓國이 屬國인 故로 內政에도 關係가 있다고 말하더라도 露國政府에서는 決코 이를 인정하지 않을 더이며 또 貴國이 朝鮮問題에 着手함에 있어 我國에 의뢰할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諒悉扶助하겠다고” 對答했다 한다.⁽¹⁷⁾ 當時 日本은 韓國

(9) Dennett, *op. cit.*, p. 441; Conroy, *op. cit.*, p. 41; Jones, *Foreign Diplomacy...*, p. 94.

(10) *China Despatches*, Vol.36, Aug.22, 1874, Dennett, *op. cit.*, p. 441n; Treat, *Diplomatic Relations...*, I, pp. 450-483; 葛生, 日支交渉外交史, 東京, 黑龍會, 1938~1939, I, pp. 57-60; 田保橋, 前掲書, I, pp. 317-318.

(11) 王, 日支外交六十年史, I, pp. 82-124.

(12) 日省錄, 承政院日記 等, 朝鮮史, 6編, 4卷, pp. 333-334.

(13) 大日本外交文書, 8卷, pp. 53-55; 9卷, pp. 143-144; 王, 日支外交六十年史, I, pp. 124-127.

(14) 王, 日支外交六十年史, I, pp. 133-135; Deuchler, *op. cit.*, pp. 29-30.

(15) 日本外交文書(Microfilm), Sp 5, pp. 13-16; Nelson, *op. cit.*, pp. 126-134; Palmer, *Korean-American Relations*, p. 282.

(16) See Jones, *Foreign Diplomacy...*, pp. 106-139.

(17) 朝鮮關係考證彙輯, 申基碩, 東洋外交史, 서울, 東國文化社, 4288年, pp. 166-167에 引用.

과의 戰爭에서(即 韓國侵略에서)露國이 日本을 支持하는 代價로 樺太를 露國에 讓渡한다는 所聞까지나 들었다.⁽¹⁸⁾ 또 다른 國家代表인 伊太利駐日公使는 寺島外相에게 “多數의 兵隊를 帶同하는 樣으로 新聞紙에 掲載되어 있는데”라고 問疑했다. 이에 對해 寺島外相은 “否. 陸兵은 없다. 警艦 2, 3隻 常日裝載의 海兵이다”라고 答했다. 伊公使가 “使節의 提言에 不應할 때엔 開戰할려는 趣意인가”라고 묻자 寺島外相은 “否. 訓條에 應하지 않을 때는 즉시 開戰하라고 指畵한 것이 아니라 彼の 諾否를 我政府에 보고한 後 다시 指畵할 것이다”라고 答했다 한다.⁽¹⁹⁾

한편 美國公使 John A. Bingham은 “日本은 韓國에 對해 宣戰布告할지 모른다”라고 報告하면서, 美國은 韓·中關係를 考慮하여 韓·日戰爭에서 嚴正中立을 宣言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라고 했다.⁽²⁰⁾ 同年(1875年) 12月 9日 寺島外相은 Bingham 美公使에게 日本政府는 韓國과 修好通商條約을 締結하기 爲해 全權을 派遣키로 決定했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Bingham 公使는 戰爭을 避하고 可能하면 平和的으로 交涉할 것을 強調했다.⁽²¹⁾ 寺島外相은 同日 英國代表와도 面談하였는데, 日本政府는 外國代表들의 意見을 알아 본 것이다. 即 日本은 西洋諸國들이 日本의 韓國 遠征을 如何히 對할 것인가의 反應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駐中英國公使 Sir Thomas Wade의 報告에서도 엿볼수 있다. Wade 公使는 本國政府에 보낸 報告에서 自己와 森有禮 日本特使와의 面談에서 日本은 韓國遠征을 決定하고 있으며, 英國이나 其他 外國이 日本의 遠征에 反對할 것인가를 알려고 한것 같다고 했다.⁽²²⁾ 한便 駐日英國公使 Parkes는 同年 7月 20日에 本國에 報告하기를 韓·日交涉이 決裂될 可能性이 있으며, 日·露兩國의 對韓改革協商이 報告되고 있으며, 獨逸 軍艦이 占領을 爲해 韓國西海岸을 測量하고 있다라고 하고 英國은 “直刻 韓國의 南海岸과 島嶼들을 測量하고 萬一 他國이 이미 占領하지 않았으면 英國이 巨文島를 곧 占領해야 한다고 提議했다.⁽²³⁾ 그리고 24日에는 極秘로 報告하기를 韓·日 戰爭은 露國에게 元山港을 차지할 機會를 줄 것이고, 日本內의 輿論은 韓國과의 戰爭에 贊成하고 있으며, 萬一 露國의 中立과 中國의 無力을 保障받으면 日本政府는 戰爭을 始作할지 모르므로 英國政府는 露日兩國이 獨占의 利益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²⁴⁾ 그러나 當時의 英國政府는 Parkes 公使의 報告를 다 믿지 않았으며 巨文島占領도 贊成하지 않았다.⁽²⁵⁾ 이때 獨逸公使 Max von Brandt는 日本은 韓國에 對해 軍事的 行動을 取할 것으로 看做하였으며, 韓國의 西海

(18) Jones, *Foreign Diplomacy...*, pp. 97-98.

(19) 申基碩, 前掲書, pp. 166-167.

(20) *U.S. Foreign Relations*, 1876, No. 181, p. 348. (Bingham to Fich, Oct. 6, 1875).

(21) Treat, *Diplomatic Relations...*, I, p. 592.

(22) 大日本外交文書, 9卷, pp. 140-141; Jones, *Foreign Diplomacy...*, pp. 94-96; Deuchler, *op. cit.*, p. 27.

(23) See Jones, *Foreign Diplomacy...*, pp. 108-110.

(24) Parkes to Derby, Yedo, July 24, 1875, Confidential, in *Ibid.*, p. 111.

(25) *Ibid.*, p. 113.

에 와서 測量中인 獨逸軍艦을 他國 外交官들은 韓國의 島嶼占領을 目的하고 있다고 生覺했다.⁽²⁶⁾

한편 提督인 에노모도·다케아키 駐露日本公使는 雲揚艦事件은 宣戰布告의 理由가 된다고 하고, 露·中兩國은 韓·日戰爭에 干涉하지 않을 것이며, 日本은 “大膽한 軍事的 行動”으로 韓國을 征服해야 한다고 提議했다.⁽²⁷⁾

中國에서의 交涉에서 日本이 雲揚艦事件을 朝鮮側과 直接交涉하겠다고 하자, 中國(總理衙門)은 朝鮮은 中國의 屬國이나 中國은 朝鮮의 內政이나 外交에 干涉하지 않았다고 했다.⁽²⁸⁾ 日本側은 이것을 朝鮮은 獨立國라고 看做할 수 있다고 解釋하였으며, 伊藤博文은 이러한 韓·中關係에 對한 駐中公使의 報告書를 “기꺼이” 派韓된 黑田·井上 代表들에게 通報했다.⁽²⁹⁾ 그러나 李鴻章은 森特使와의 會談에서 韓國은 數千年來 清國에 屬해 있었으며, 租稅를 徵收하고 政務를 統覽하는 內屬의 省은 이나나 “外藩”으로서의 屬國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韓, 日, 清國은 같은 亞細亞民族으로 서로 相爭하는 것은 歐羅巴의 “物笑”가 될 것이라고 하고, 萬一 日本이 朝鮮을 攻擊하면 露國은 黑龍江에 出兵하고 清國도 出兵할지 모른다고 警告했다.⁽³⁰⁾ 1876年 1月 24日과 25日의 李·森會談에서 李鴻章은 日本은 雲揚艦事件을 誘發시켜 韓國의 領海를 侵犯하고 韓國領土를 犯하여 殺傷을 行하고 이제 使節을 派遣하여 問責한다니 무슨 일이냐고 따졌다.⁽³¹⁾ 이에 森公使는 韓國은 仁愛의 道를 지키지 않고 他國과 交通을 하지 않고 外來船에 發砲하고 沿船의 測量을 不許한다고 했다.⁽³²⁾ 李鴻章은 朝鮮은 “日本과 交通을 열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朝鮮은 그 影響을 憂慮하고 있다.” 萬一 他國들이 本日の 例를 따라 “그들의 狡黠한 商業을 經營하게 되면 朝鮮은 곧 衰亡할 것임. 이것을 朝鮮은 무서워 하는 것”이라고 했다.⁽³³⁾ 그리고 이 會談 10日 前인 1月 14日에 清國恭親王은 森公使에게 覺書를 交付하면서 清國은 朝鮮國의 內治·外交에 干涉하지 않으나 韓·日交涉에 當해서 日本側은 清日條約에 따라 “屬邦”을 “侵越하지 않을 것”을 希冀한다라고 했다.⁽³⁴⁾

이 中國이 主張한 宗主權 問題는 韓日條約交涉에서 重要한 中·日 問題로 浮刻 되었으며 李鴻章은 “朝鮮은 獨立國이다. 그러나 其 國王은 現 [清國] 皇帝의 命에 依해 서고 있음으

(26) 日本外交文書, 8卷, pp. 139-140; 9卷, p. 142; Deuchler, *op. cit.*, p. 26.

(27) 日本外交文書, 8卷, pp. 127-130; Deuchler, *op. cit.*, p. 25.

(28) 日本外交文書, 9卷, pp. 141-162; 王, 日支外交六十年史, I, pp. 131-133.

(29) 伊藤博文傳, 中, pp. 15-17; 977-978.

(30) 王, 日支外交六十年史, I, pp. 139, 144, 146. 李鴻章·森有禮會談(陰 1875年 12月 28日)은 pp. 135-147 參照.

(31) 日本外交文書, 9卷, p. 173; 王, 日支外交六十年史, I, p. 141.

(32) 同書, p. 141; 日本外交文書, 9卷, p. 174.

(33) 同上.

(34) 日本外交文書, 9卷, pp. 164-165; 王, 日本外交六十年史, I, pp. 131-133 參照.

로 淸國의 屬隸다”라고 끝까지 朝鮮의 屬邦을 主張했다.⁽³⁵⁾ 그러나 中·日兩國은 韓國의 開國을 戰爭이나 衝突없이 가져오게 했다. 中·日兩國은 宗主權을 둘러싸고 意見의 對立을 보았으나, 兩國은 다같이 西洋諸國으로부터 壓力을 받고 있었던 亞細亞國家였으며, 西洋帝國主義에 對해 共通된 對抗意識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1871년에 締結된 中·日修好條約은 兩國間의 友好를 強調하였으며, 1873~4년에 있었던 琉球·臺灣事件도 一旦 冷却 되고 解決되어 가고 있었다. 特히 日本은 中國에 對해 大國이라는 傳統的 尊敬心을 아직도 갖고 있었으며, 北方의 露國에 對해서는 다같이 警戒를 하고 하였다. 1875年 2月 岩具는 天皇에게 上疏하기를 “露國은 여러 外國들이 第一우서워 해야 할 나라다. 萬一 中國이 露國에 依해 合併된다면, 日本의 獨立이 危殆롭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日本은 中國과의 友好에 努力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相互間의 支援과 協力으로 兩國은 그들의 完全한 獨立을 保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³⁶⁾ 이 日本의 對露警戒는 江華條約後 渡日한 朝鮮修信使 金綺秀에게도 強調되었다. 江華條約交涉時의 日本側 副全權이었던 井上馨은 金修信使에게 強調하기를 露國이 韓國에 對해 關心을 갖고 있는 徵兆가 있으니 韓國은 露國의 侵略에 對備해야 하며, 歸國하면 朝鮮朝廷에 對露防備策을 事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報告하라고 勸했다.⁽³⁷⁾ 그리고 森山茂는 金修信使에게 “富國強兵”을 爲한 改革을 強調하면서 韓·日兩國은 이(齒)와 唇(唇)과 같이 依存하면서 外部의 侵略을 막아야 한다고 했으며,⁽³⁸⁾ 寺島外相도 金修信使에게 韓·日兩國을 齒唇의 關係로 比諭하면서 兩國의 協力を 強調했다.⁽³⁹⁾ 當時의 中國도 對露警戒에 關해서는 日本과 마찬가지로였으며, 日本은 이와같은 對露警戒와 韓國內에서의 大院君 下野와 閔妃派의 執權을 그의 韓國開國 交渉에 考慮했던 것이다.⁽⁴⁰⁾

美國의 Perry條約을 본따서 韓國을 開國한 日本은⁽⁴¹⁾ “招請外交”를 벌였다. 그래서 위에서 言及된 金綺秀 修信使를 맞았으며, 그를 通해 韓·日間의 友好를 強調하면서, 同年(1876) 8月에는 韓國과 江華島修好 條約附錄과 貿易에 關한 協約을 締結함으로써, 韓國에서의 政治的, 經濟的 地位를 強化했다. 이 追加條約들은 “日本의 韓國侵透의 길을 터놓았으며 韓日間의 不平等條約關係의 始作을 表示했다.”⁽⁴²⁾ 日本은 繼續 韓國의 視察團을 招請했다.

(35) 日本外交文書, 9卷, p. 172; 王, 日支外交六十年史, I, pp. 135-147. 總理衙門의 覺書와 日本의 照會文, pp. 125-133 參照.

(36) Oka Yoshitakain Marlene Mayo (ed.), *The Emergence of Imperile Japan: Self-Defense or Calculated Aggression?* Lexington, Mass., D.C. Heath and Co., 1970, p. 4.

(37) 金綺秀, 日本記游(李載浩 註譯), pp. 125-126. 金綺秀는 1876年 5月 渡日하여 6月 1日 參朝謁見함. 6月 18日 東京發 歸함(pp. 20-22). 明治維新後 朝鮮의 使節으로는 처음임. 日本外交文書(Microfilm) (韓國研究院所藏) MF, SP-5, p. 23, Griffiths, *The Hermit Nation*, p. 424.

(38) 金綺秀, 日本記游, pp. 121-122.

(39) 同書, p. 132.

(40) 旗田, 朝鮮史, p. 93.

(41) Treat, *Diplomatic Relations...* II, p. 25n.

(42) K.J. Shin,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mmediately After the Kangwha Treaty”, *International Relations*, Tokyo; The Jap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62, No.2, English Section, p. 3.

1880년에는 金弘集,⁽⁴³⁾ 1881년에는 洪英植·魚允中 等,⁽⁴⁴⁾ 그리고 1882년에는 金玉均 等を 招請했다. 그리고 韓國에서는 1876年 11월에 釜山에 처음으로 領事館을 두게 되니⁽⁴⁵⁾ 韓·日 兩國은 이제 西洋式外交關係를 樹立하게 된 것이다.⁽⁴⁶⁾

韓國의 開國에 成功하자, 日本側 全權이었던 黑田는 歸國하여 駐日美公使 Bingham에게 江華條約에 對해 說明했다. 黑田 全權은 美國 將軍 Horace Capron과 그의 補佐官들을 雇傭했으며 Bingham公使는 이러한 事實을 知曉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⁷⁾ 그리고 George Seward 駐上海總領事는 3月 15日 日本의 韓國開國成功은 美國의 韓國開國을 爲한 機會로 보고 國務長官에게 韓美條約交涉의 任務를 自願했다.⁽⁴⁸⁾ 美國 總領事 Seward 뿐만 아니라, 駐日英國公使 Sir Harry Parkes도 韓國의 開國에 關心을 나타냈다. 그는 翌 1877年봄에 韓國에 遠征을 보낼 것을 本國(英國)政府에 提議했다. 그러나 英國政府는 衝突의 危險성과 極히 적은 貿易을 理由로 Parkes公使의 提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⁴⁹⁾

英國政府의 態도와는 달리 美國政府는 11月 30日 Bingham 駐日公使에게 日本에 對해 感謝를 表하고 美國의 江華島 遠征(1871)은 誤解에서 일어 났다는 事實을 韓國人들에게 理解할 수 있도록 說明해 주도록 하라고 訓令했다.⁽⁵⁰⁾ 여기서 日本에 對한 感謝라 함은 江華條約附錄 第10條에서 外國 遭難船員을 日本管理官에게 遞送하여 本國으로 送還하게 함을 意味하며, Bingham 美公使는 日本이 이 點에 對해 功勞가 있다고 말했다.⁽⁵¹⁾

2年後인 1878년에 와서 美國은 韓國과의 條約締結에 對해 積極的인 關心을 나타냈다. 이해에 Sargent 上院議員과 Banning 下院議員은 韓美條約의 交涉을 爲한 法案을 國會에 提出했으며⁽⁵²⁾ 美國政府는 Shufeldt提督에게 韓國과 條約交涉을 할 것을 指示하고, 駐日公使에게 Shufeldt의 交涉을 爲한 日本政府의 仲裁을 要請할 것을 訓令했다.⁽⁵³⁾ Shufeldt提督이 韓美條約交涉의 使命을 받게 된 것은, Jones에 依하면, 그가 1867년에 韓國을 訪問하였고, 海軍省文書와 Shufeldt 自身이 1871年 遠征은 不幸한 失策이라고 看做하고 韓美條約이 可能하다고 生覺하였으며, Sargent 上院議員과 Grant前大統領은 Shufeldt의 親知였고 Shufeldt

(43) 日本外交文書, 13卷, pp. 389-399.

(44) 渡邊, 朝鮮開國……, pp. 60-63.

(45) 日本外交文書(Microfilm), MF, SP-5, p. 25.

(46) 金義煥, “開港後 釜山日本專管居留地設定에 관한 研究”, 韓日研究, 第2輯, 釜山, 韓國日本問題研究會, 1973, pp. 63-173 參照.

(47) Treat. *Diplomatic Relations...*, II, p. 24.

(48) George Seward to Sec. of State Fish, March 15, 1876, *Ibid.*; Jones, *Foreign Diplomacy...*, pp. 176-177.

(49) Jones, *Foreign Diplomacy...*, pp. 164-165.

(50) Seward to Fish, Sec. of State, Nov. 30, 1876, Treat. *Diplomatic Relations...*, II, p. 25n.

(51) Treat. *Ibid.*, II, pp. 24-25.

(52) *Congressional Record*, 45th Congress, 2nd Session, 1878, Vol. 7, Part 3, p. 2324, 2589; Jones, *Foreign Diplomacy...*, p. 177.

(53) *Cruise of Ticonderago*, I, pp. 4-5. 22; Treat. *Dip. Rel...*, II, p. 122.

自身이 積極的으로 活動한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⁴⁾ 韓·美條約交渉을 決定한 美國政府는 1880年 日本政府에 對해 美國의 對韓交涉에 協助해 줄 것을 要請하였다. 이러한 美國側 要請에 따라 井上日本外相은 韓國 禮曹判書 尹滋承에게 書翰⁽⁵⁵⁾ (1880年 5月 29日字)을 보내 Shufeldt提督을 紹介하고, 勸告하기를 美國이 求하는 것은 修好通商을 바라는 外에 他意가 없으며 鎖國은 日本과 淸國의 經驗으로 보아 維持하기 不可能하며, 잘못하면 不測의 禍를 보게 될 것이니, 提督의 請에 應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⁵⁶⁾ 美國이 이와 같이 對韓交涉에 積極性을 띠게 된 것은 日本에 依한 韓國開國과 Shufeldt 提督, Sargent 上院議員, Seward 上海總領事等の 勸告와 活動에 影響을 받은 바 큰 것 같으며, 日本의 韓國開國에 感銘받고 日本의 協助를 要請한 것이다.⁽⁵⁷⁾ 그리하여 日本은 在釜山 近藤에게 Shufeldt 提督을 도와줄 것을 訓令했으며⁽⁵⁸⁾ Shufeldt를 爲해 Bingham 公使에게 測量圖까지 주었다.⁽⁵⁹⁾ 그러나 日本의 在韓日本官吏에게 보낸 訓令中에는 美國使臣이나 朝鮮政府가 助力을 求하면 “中立”을 지키며 “使事の 成就를 贊助할 것”이며 約條는 “困難民救助”의 事項에 그칠 것이고 “通商貿易”의 問題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 “目下 平安을 保障하는 길이다. 잘 注意하여 이를 다루어라”⁽⁶⁰⁾는 指示도 包含되어있다. 이 通商貿易條項 不包含 訓令이 朝鮮側의 反對를 豫期한 것인지, 또는 “平和를 保障”하여 日本의 利權과 獨點을 얻기 爲한 것인지는 確實치 않다. 그러나, Dennett교수가 指摘하듯이, 日本은 “眞摯한 慾望”으로 韓美交涉을 周旋하지 않고 “交涉을 自己自身の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操縱” 하였는지 모른다.⁽⁶¹⁾ 韓國에 있어서의 外國外交를 研究한바 있는 John에 依하면, 日本은 眞心으로 Shufeldt를 도와주지 않았으며 美國政府는 그릇된 駐日公使의 報告에 따라 日本政府의 仲裁에 感謝했다는 것이다.⁽⁶²⁾ 그러면 Shufeldt 提督本人은 日本의 仲裁을 如何히 生覺하고 있었는가? 10月 13日 Shufeldt 提督은 海軍長官 Thompson에게 報告하기를 그는 日本의 行動에 滿足하고 있지 않으며, 日本은 韓國에서 “商業을 獨占”하려 하고 있으며, 外國인들이 韓國에서 日本이 如何히 “防禦가 없는 이웃”을 支配하는가를 보는 것을 願치 않고 있다고 했다.⁽⁶³⁾ 그리고 伊太利의 Duke of Genoa의 訪韓印象이나 Donald Spence 英國領事의 報告는 日本이 韓國에서 모든 外國들

(54) Jones, *Foreign Diplomacy...*, pp.182-183.

(55) Shufeldt의 高宗國王에게 보낸 書翰, May 4, 1880, in Jones, *Foreign Diplomacy...*, p.197n.

(56) 日本外交文書(Microfilm), MF, SP-5, p.31; 奧平, 朝鮮開國交渉始末, pp.69-70; 李朝外交文書 日案, 卷2, 渡邊, 前掲書, pp.384-385;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 下, p.186.

(57) Bingham to 井上外相, 東京, 1880年 5月 21日, 日本外交文書, 13卷 pp.439-440; 董, 前掲書, pp.20-26; See *Japan Dispatches*, Vol.42.

(58) 井上の 近藤에게 보낸 書翰(1880年 4月), 日本外交文書, 13卷, p.437;

(59) 上野大輔 外相代理가 Bingham 公使에게 주었음. 日本外交文書, 13卷 p.437.

(60) 日本外交文書, 13卷, pp.420-425; 426-428.

(61) Dennett, *Americans in Eastern Asia*, p.457.

(62) Jones, *Foreign Diplomacy...*, pp.202-205, See *Japan Dispatches*, Vol.43 and *Japan Instructions*, Vol.3.

(63) Shufeldt to Thompson, Oct.13, 1880, Jones, *For. Dip...*, p.215.

을 “妨害”하고 있다고 했다.⁽⁶⁴⁾

日本の “操縱”이 어느 程度 韓美交涉에 影響을 주었는지 確實치 않으나, Shufeldt는 日本을 통한 對韓交涉에 失敗하였으며, Bingham公使는 井上 外相에게 韓國의 禮曹判書는 美日 兩國政府의 要請을 拒絕함으로써 “큰 過誤를 犯했다”라고 했다.⁽⁶⁵⁾

日本政府의 仲裁에 依한 韓國開國에 失敗한 Shufeldt는 “武力의 示威”와 巨文島의 占領까지 本國政府에 提議했다. Thompson 海軍長官에게 보낸 報告(5月 31日)에서 Shufeldt提督은 韓國의 開國을 통해 “武力을 示威”하고 非常時에는 巨文島를 占領하여 美國의 商業을 保護케 할 것을 提議했다. 그리고 萬一 亞細亞艦隊를 臨時 自己 指揮下에 두게 되면 自己는 이 問題(即 韓國의 開國)을 成功的으로 이끌도록 努力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亞細亞에서의 美國의 勢力이 增大되고 現行政府에도 大成功을 가지 올 것이라고 했다.⁽⁶⁶⁾ 그러나 Thompson海軍長官은 “韓國人과 說得力있는 手段만 使用하라. 衝突(hostilities)은 避하라”라고 訓電했다.⁽⁶⁷⁾ 이와 같이 하여 Shufeldt의 日本仲裁에 依한 交涉이나 武力에 依한 韓國開國은 日本의 支持不足, 韓國의 消極的 態度 그리고 本國政府의 武力使用反對로 失敗했다. 日本의 積極的 支持와 本國政府의 武力使用 贊成이 韓國의 開國을 가져왔을지는 確實치 않으나, 當時 日·美兩國政府의 對韓政策이 Shufeldt의 交涉에 影響을 준 것은 事實이며 結局 Shufeldt는 이 韓·美·日 交涉에서 失敗했다.

그러나 Shufeldt의 對韓交涉에는 새로운 길이 띄었다. 當時 露國의 南進과 日本의 北進을 警戒하고 있던 中國은 “以夷制夷”策으로 特히 美國을 利用하는 “引美牽俄策”을 쓰려고 했다. 그래서 中國의 李鴻章은 한便으로는 Shufeldt 提督을 中國에 招請하여 中國이 韓美交涉에 仲裁役割을 할 뜻을 밝히고,⁽⁶⁸⁾ 또 한便으로는 朝鮮政府에 美國과 修交하여 露·日兩國에 對한 對備策을 강구할 것을 勸告했다.⁽⁶⁹⁾ 當時 李鴻章은 日本의 琉球合併과 露國의 利犁侵略으로 日·露牽制策이 必要하였으며, 그 抑制策으로 天主教나 阿片問題를 일으킬 佛·英 代身 友好國으로 믿던 美國을 韓國에 勸告했다. 뿐만아니라 李鴻章은 Grant前美國 大統領과 中·美攻守同盟까지 論議(1879)한바 있었다.⁽⁷⁰⁾ 이 李鴻章의 引美牽俄策은 그의 奉覆 및 總理衙門의 上疏文에서도 強調되고 있으며,⁽⁷¹⁾ 當時 駐日中國公使館 事記官 黃遵憲

(64) Angel 駐中美國公使의 Everts 國務長官에게 보낸 報告(Sept. 27, 1880), *China Dispatches*, Vol.55, Jones, *For. Dip...*, pp. 202-205; 215-220 參照.

(65) Bingham 公使·井上外相, 1880年 9月 11日, 日本外交文書, 13卷, pp. 453-455, 442-456 參照.

(66) See Jones, *For. Dip...*, pp. 207-208.

(67) *Ibid.*, p. 208.

(68) *Cruise of Ticonderago*, II, pp. 46-47. 李鴻章은 Shufeldt提督에게 中國海軍顧問이 될 것을 希望하였다.

(69) 李裕元에게 보낸 李鴻章의 密書, 王, 日支外交六十年史, I, pp. 163-167.

(70) Jones, *For. Dip...*, p. 186.

(71) 王, 日支外交六十年史, I, pp. 160-167 參照.

이 쓴 “朝鮮策略” 또는 “朝鮮政略”이란 小冊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⁷²⁾ “親中國，結日本，聯美國以圖自強而已”를 強調한 防俄之策은 韓國의 國王高宗과 大臣들에게도 影響을 주었다 結局 韓國은 中國의 周旋과 勸告 Shufeldt의 努力과 이미 日本에 開國한 韓國의 內外 情勢 變化等으로 西洋國으로는 最初로 美國에도 門戶를 開放하게 되었다.⁽⁷³⁾ 그러나 韓美條約交 涉에서 中·美兩國은 中國의 宗主權 問題로 對立하여 結局 朝鮮國王이 宗主權을 認定하는 內容의 照會文을 美國大統領에게 보내기로 妥協合議했다.⁽⁷⁴⁾ 이와같이하여 韓國은 韓日條 約과 韓美條約을 締結하여 東西洋 諸國에 門戶를 開放하여 그들과 近代式, 西洋式 外交關 係를 맺고 所謂 “自主” “獨立國”이란 새로운, 그러나 複雜한 時代를 맞이한 것이다.

● V. 結 論

韓半島는 中國과 地理的으로 第一 가깝고 領土的으로 連結되어 있다. 그래서 韓國의 對 外關係도 主로 中國과 密接하고 特殊한 關係를 맺고 있었다. 19世紀에 와서 西洋諸國이 東 洋諸國을 開國시킬 때까지 韓國은 中國과 “宗屬關係”라는 儒教的 國際秩序 속에서 關係를 맺고 있었으며 西洋諸國의 交易要求나 公式 接觸을 拒否하였다. 韓國은 그 自身이 中國의 宗主權을 認定하면서 十六世紀부터 來韓하기 시작한 所謂 異洋船들을 正式으로 받아 들이 지 않았다. 初期의 異洋船 들은 主로 遭難으로 淡水를 求하기 爲해, 測量을 爲해, 또는 航 行中 遇然히 韓國의 海岸에 나타났으나 19世紀 中葉부터는 洋船의 來韓 目的이 뚜렷해졌다 英船의 來韓, 天主教 宣教師의 虐待에 對한 問責으로 始作한 佛蘭西의 遠征, 美國의 General Sherman號 事件과 遠征, 露西亞軍艦의 來韓과 商人들의 國境 侵犯, 獨逸人의 來韓과 掘塚 事件 等은 韓國과의 交易 即 韓國의 開國을 願했으며, 그들은 한국과 條約을 체결하여 交 易을 하고 遭難船員의 保護를 받고 또는 天主教를 傳播하려고 했다. 그러나 韓國은 계속 開國을 拒否하였으며 中·日 兩國의 開國後에도 鎖國을 堅持하면서 斥和政策으로 기독교 宣教師와 信徒들을 彈壓하기도 했다.

한편 “大國”인 中國은 阿片戰爭을 계기로 歐州國인 英國에 開國하고 日本은 亞米利加의 美國에 開國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鎖國을 固守하던 韓國은 歐州國도 아니고 亞米利加도 아 닌 같은 東洋國家인 日本에 開國했다. 日本은 中國 다음 가는 韓國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며 開國 前에는 通信使 外交關係를 갖고 있었다. 兩國은 七年戰爭 後인 德川幕府 時代에 비교적 友好的인 關係를 維持해 왔으나, 明治維新으로 始作된 新帝國 日本과는 새로운 國 交關係 樹立을 둘러싸고 對立하였다. 西洋化와 近代化에 成功하고 있던 明治政府는 膨脹主 義, 資本主義, 帝國主義도 模倣하여 韓半島에 對한 大陸進出을 決定했다. 그리하여 征韓論

(72) 黃遵憲(趙一文譯), 朝鮮策略, 서울, 建國大學校 出版部, 1977, 參照; 日本外交文書, 13卷, pp. 389-394. 修信使 金弘集이 1880年 10月 2日 復命時 國王에게 奉呈한.

(73) 董, pp. 27-37; Jones, *For. Dip...*, pp. 254-295.

(74) *Ibid.*; 奧平, 前揭書, p. 115, 119-120; Dennett, *op. cit.*, pp. 459-464.

이 擡頭되고 雲揚號事件을 造作 發生시켜 日本은 결국 西洋의 方法과 手段에 依해 韓國을 開國시켜 西洋式 不平等條約을 締結했다. 韓國의 門戶를 開放시킨 日本은 놀랍게도 數年 內에 韓國을 日本製品의 市場으로 만들었다. 一旦 開國된 韓國은 西洋國인 美國에도 6年 後에 開國되었다. 그렇게 鎖國을 固守하던 “隱遁의 나라” 韓國도 이제 東西洋에 그 門戶를 開放하게 된 것이다. 國內外的 政治的 變化와 中國의 露日牽制策은 韓國의 鎖國을 開國으로 變化시킨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韓·日과 韓·美條約 交涉에서 中·日과 中·美는 韓國에 있어서의 中國의 宗主權을 둘러싸고 對立하였으며 中國이 주장한 이 宗主權은 開國後의 韓國의 對外關係에 적지 않은 問題와 物議를 일으켰다. 그리고 開國으로 日本, 美國 등의 새로운 外國文化가 導入되어 韓國內에서는 改革을 외치는 進步·開化派와 現狀을 維持하려는 守舊·保守派 間의 對立鬭爭이 展開되었다. 國際적으로 中國은 袁世凱, von Möllendorff 등을 派韓하여 韓國의 內治 및 外交에 간섭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保守·進步 間의 勢力 鬭爭은 中·日 兩國의 對立 鬭爭으로 化한 것이다. 그리하여 美國에 開國한 1882년에는 壬午軍亂, 2年 後인 1884년에는 甲申政變이란 두 政治的 變亂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甲申政變으로 中·日 兩國은 天津條約을 締結하여 日本은 韓國을 中國과 對等한 地位에서 처리할 수 있는 外交的 基盤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天津條約이 締結된 1885년 4月에는 英國의 巨文島占領事件이 發生하여, 英·露의 對立을 가져 왔으며, 같은 해에 大院君이 中國에 押送된 지 三年만에 歸國하였다. 中國은 同年 韓·露密約說과 關聯하여 親露的인 von Möllendorff를 罷免시키고 大院君을 歸國시켜 露國을 牽制하려 했다. 巨文島事件은 그 後 中國의 仲裁로 英國의 撤收를 보게 되었다. 韓國의 開國은 東北亞 國際政治에 큰 影響을 주었으며 韓國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中·日 兩國의 勢力鬭爭을 가져 왔다. 이 鬭爭은 그 後 淸·日戰爭으로 그 幕을 내리게 된 것이다.